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I)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제 1 권 FTA · 수입 · 평가감면 · 품목분류

<input type="checkbox"/> FTA 등 특례관세	17
1.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19
2.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확인방법	20
3.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22
4. 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	27
5.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29
6.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31
7.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간 차이 발생	32
8. 운송요건	33
9. 양수도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34
10. 수리 ·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35
11. 보세공장 제조 물품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 적용	36
12.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 간 HS code가 다른 경우	37
13.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39
14. 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면제기준	40
15.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적용 가능 여부	41
16.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보관 의무	42
17. 사후 검증	43
1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45
19.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46
20.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47
21. 인증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면제 여부	48
22. 인증수출자가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재인증 필요 여부	49
23.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차이	50
2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51
25.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3국송장 관련 기재요령	52
26. 한-아세안 FTA 환적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53
27. 한-아세안 FTA 사후 적용 가능 여부	54

28. 한-EU FTA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	55
29.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방법	56
30. 한-EU FTA 환적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7
31.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58
3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	59
3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61
34. APTA 원산지 결정기준	62
□ 수입통관	63
– 일 반	65
1. UNI-PASS	67
2. 통관고유부호	68
3. 수입신고 세관	69
4. 납세의무자	70
5. 수입자의 자격요건	71
6. B/L 분할신고	72
7. 수입신고 시기	73
8.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75
9. 수입신고 취하	77
10. 사전세액심사	78
11. 신고지연 가산세	79
1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80
13. 수입 요건 및 절차	82
14.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83
15.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84
16. 샘플 수입신고	85
17.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	86
18. 성인용품 수입	87
19. CITES 물품 수입	89
20. 곤충류 수입	90
21. 애완동물 수입	90
22. 전갈 및 독거미의 수입통관	91
23. 총포류 등 수입	92
24. 육류 수입신고	93
25. 식용 활어 수입	94
26. 커피, 차류 등 수입	95



27. 식용 식물류 수입	96
28. 쌀의 수입통관	97
29. 과일 수입	98
30. 화장품류 수입	98
31. 전기용품 수입	99
32. 의료용구 수입	100
33. 의약품 수입	101
34. 선박 수입	101
35. 승용자동차 수입	102
36. 중고승용자동차 수입	104
37. 오토바이 수입	106
38.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107
39. 수입물품 검사	110
40. 고철 및 비금속 설비 수입	111
41.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관리	112
42. 수입신고필증 진위확인	113
43. 관세사	114
- 징 수	115
1. 보정	117
2. 수정신고	118
3. 내국세 가산세	119
4. 관세납부방법	122
5. 납부기한 및 체납	123
6.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124
7. 과오납환급(경정청구)	125
8. 위약환급	127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28
10. 징수최저한 금액	129
11. 관세납부제도	130
12. 담보의 종류	131
13. 포괄담보	133
14. 담보제공대상	135
15. 신용담보업체 지정	137
16. 월별납부업체 지정	139
17.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140

18.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141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142
20. 체납자의 출국	144
– 남북교역	145
1. 북한산물품 중 통일부승인 품목	147
2. 북한산물품의 요건	148
3. 북한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149
4. 북한산물품의 원산지표시	150
5. 북한 임가공물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51
– 지식재산권	153
1. 병행수입이란?	155
2. 병행수입 가능여부의 확인	158
3.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159
4. 위조상품 수출입 처벌	160
5. 상표권 등록 방법	161
6.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	162
7. 상표법 위반	167
– 원산지	169
1. 원산지증명서 제출	171
2. 원산지 판정기준	172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73
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174
5. 원산지표시 면제	175
6. 원산지표시 방법	177
7.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	180
8. 원산지 판정 제도	181
9.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182
10. 주류의 원산지 표시	183
11. OEM 방식의 원산지 표시	184
12.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185
13. “Handcrafted in 국명”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186
14.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187



15. 단순가공한 국가를 원산지와 같이 표기한 경우	188
16.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189
17.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판정	191
– 유통이력 관리	193
1. 유통이력은 왜 하나요?	195
2. 유통이력신고 방법	196
3. 유통이력대상물품	197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	198
5. 유통이력 신고일자	199
□ 평가 · 감면 · 사후관리	201
1. 과세환율	203
2. 잠정가격신고 제도	204
3. 무상수입물품의 과세 이유	205
4. 무상수리비 과세 이유	206
5.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운임 과세가격	208
6. CIF조건 수입시 BAF 과세 이유	209
7. 무형물 과세 여부	210
8. 수입물품의 국내 설치비 과세 여부	211
9. 보상차원의 가격할인 인정 여부	212
10. 인터넷 구매 할인 인정 여부	213
11. 대체품 무상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215
12. 생산지원비 과세	216
13.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218
14.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219
15.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220
16. 해외임가공 수입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 여부	221
17. 관세감면 신청시기	222
18.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223
19.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224
20.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입)	225
21.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학교에서 수입)	226
22. 종교용품 면세	228
23. 장애인용 차량 면세	229
24. 정부용품 면세	231

목 차

25. 특정물품 면세	232
26. 소액물품(견품) 면세	233
27.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재수출)	235
28.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제3국 재수출)	236
29.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전시 후 재수출)	237
30. 재수출감면세	238
31. 재수입면세(수입자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239
32.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240
33.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임가공물품)	242
34.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243
35.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245
36. 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246
37. 용도외사용승인시 감면 승계 가능 여부	247
38. 기업부설연구물품 설치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48
39.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승인시 가산세 부과 여부	249
40. 환급받은 관세 추징 후 재수입면세 신청가능 여부	250
41. 재수출 불이행 추징이후에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251
42.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시 납세의무자	252
43.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장소 등	253
44. 사후관리 대상 의무사항 안내	254
45. 사후관리 제외대상인 품목당 1,000만원의 의미	255
□ 품목분류	257
1.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의 정의	259
2. 품목번호(HSK)의 확인방법과 절차	260
3.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와 변경절차 및 결정사항 효력	263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기능과 운용 방법	264
5. 수입신고한 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가능 여부	265
6. 제비추리·삼겹살의 품목분류	266
7. 돼지족의 품목분류	267
8. 쇠고기·수산물·채소 등의 염장 기준	269
9. 신선한 장어의 품목분류	270
10. 껍질째 얇은 새우·오징어(냉동), 한치와 꿀뚜기	271
11. 냉동한 명태 피레트(Fillet)의 품목번호	272
12. 게 껍질의 품목분류	273
13. 식용 어류 설육의 품목분류	274



14. 소의 곱창과 양·천엽의 품목분류	275
15. 더덕 및 도라지의 품목분류	276
16.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277
17.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278
18. 스위티(sweetie) 과실에 대한 품목분류	279
19.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	280
20. 올스파이스(Allspice) powder의 관세율	281
21. 고추(신선·냉장, 냉동, 건조)의 품목분류	282
22.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283
23. 쌀가루와 전분 조제품의 품목분류	284
24.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285
25.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286
26. 참깨분의 제1208호와 제2008호 분류기준	287
27. 버진 올리브유 및 카놀라유의 품목분류	288
28. 참기름·들기름의 품목분류	289
29. 폐식용유의 품목분류	290
30. 사골국물, 멸치액젓 및 사골곰탕의 품목분류	291
31. 어묵(Fish cake) 및 어란(캐비아 대용물 등)의 품목분류	292
32.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293
33. 설탕(Sugar)의 품목분류	294
34. 맥주원액의 품목분류	295
35. 당면과 만두 등 파스타의 품목분류	296
36.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빵 및 쿠키의 품목분류	297
37. 볶은 땅콩의 2012년 이후 관세율 변동 여부	298
38. 삼투탈수 후 건조한 열대과실의 품목분류	299
39.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낫또의 품목분류	300
40.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301
41. 담배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302
42. 바이오디젤 관련 제품 품목분류	303
43. 니코틴 함유한 금연보조제의 품목분류	304
44. 애견용 샴푸, 의류 및 사료의 품목분류	305
45. 수정테이프의 품목분류	306
46. 가죽(leather)의 범위 정의	307
47. 아이튠즈(i-Tunes) 카드의 품목분류	308
48.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309
49. 남자, 여자 및 유아용 의류의 품목분류	310

목 차

50. 편물제 보정 속옷(거들 등)의 품목분류	311
51. 자기와 기타 도자기(도기, 석기)의 구분	312
52. 캠핑용 스토브 등의 품목분류	313
53. 플렉시블(Flexible) 호스의 품목분류	314
54.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	315
55.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316
56. 소프트웨어(software) CD의 품목분류	317
57. CD(음악, 영화, 게임 등)의 품목분류	318
58.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319
59. Y형 Strainer의 품목분류	320
60. 수륙 양용 버스의 품목분류	321
61.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품목분류	322
62. 캠퍼(Camper)의 품목분류	323
□ 부 록	325
※ 관세상담 관련 연락처	327



2권 목차

제 2 권 특수통관 · 수출 · 환급 · 보세화물 · AEO · 기타

□ 특수통관 17

– 여행자 휴대품 19

1. 여행자 휴대물품 세액 계산	21
2.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22
3.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및 세금	24
4.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식품의 면세범위	26
5.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대상	27
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29
7. 국내면세점 구매물품의 반품	31
8. 술, 담배, 향수 면세범위	32
9. 애완견 휴대반입	33
10. 유치물품 반송	34
11. 휴대품 예치	35
12.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36

– 특송물품 · 우편물 및 해외직구 물품 37

1. 우편물 및 특급택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	39
2. 해외로부터 수취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	41
3.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	44
4. 외국에서 오는 특급택송물품 통관절차	45
5. 특급택송에서의 목록통관	46
6. 목록통관배제 물품 소액면세 관련	48
7. 특급택송물품 통관시 개인정보 요청	49
8. 우편물이나 특급택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50
9. 우편물이나 특급택송물품 우리나라 도착 여부	52
10. 인터넷 구매대행시 세관에 신고여부	53
11.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54

목 차

12. 소액면세물품의 합산과세	56
13.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절차	57
14. 외국에서 전자제품 구매시 통관절차	58
15.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	59
16. 도검반입시 제한사항	60
– 이사물품	61
1.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기준	63
2. 가족동반 내국인의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기준	64
3.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확인	65
4. 이사물품 반입기간	66
5. 이사물품 신고자	67
6.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68
7.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물품	69
8.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	71
9. 이사물품의 수입제한조건 등 심사	73
10. 이사물품자동차의 통관	75
11. 이사물품 통관지세관	78
12. 가족 차후입국에 따른 분할반입 이사물품 통관	79
13. 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	80
14. 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81
15. 이사물품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82



□ 수 출 83

1. 자가수출신고 방법	85
2. 개인화주의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86
3.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88
4.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	89
5. 수리후 원상태, 위약수출 정정 가능여부	90
6. 견본품 수출절차	91
7. 중고차 수출통관 절차	92
8. 건설기계 수출통관 절차	93
9. 선박 수출통관절차	94
10. 국내 석재와 모래 수출 요건	95
1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	96
12. 수출물품 미선적시 재재사항	97
13.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98
14. 수출신고시 운임 · 보험료 등 계산 유의사항	99
15. 수출신고서류 보관기간 및 관리방법	101

□ 환 급 103

1. 환급신청인	105
2. 환급 관할지세관 및 변경절차	106
3. 최초 환급신청 절차	107
4. 환급신청 구비서류	109
5. 추가환급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110
6.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및 가산금	112
7.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114
8. 환급대상 수출	115
9.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117
10.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119
11. 수출이행기간	121
12.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	122
13. 환급방법 조정 고시 관련 수출이행 기간	123
14. 개별환급제도	124
15. 간이정액환급	125
16. 간이정액환급 전환	126

목 차

17.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 판단 기준	127
18. 원상태 수출환급	128
19. 국내에서 구매한 수입물품 수출 후 환급	129
20.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원상태 수출	130
21. 덤핑방지관세 환급	132
22.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제한	133
2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135
24. 수입후 1년이 경과된 분증으로 기납증 발급 가능여부	137
25. 자율소요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	138
26. 환급시 부산물 공제	139
27.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	140
28.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41

□ 보세화물 143

1.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145
2. 적하목록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 기준	147
3. 적하목록 정정 생략	148
4.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	149
5. 부두보세운송 절차	151
6. 보세운송 도착 후 적하목록 정정	152
7. 과적화물의 보세운송	153
8.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155
9. 보수작업	157
10. 보세건설장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159
11. 관리대상화물 검사대상 선별 및 해제	161
12. 선용품 납품	163
13. BWT물품의 B/L 합병	165
14. 전자공매	167
15.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	170
16. 보세창고 반입정지	171
17. 보세공장 운영고시상 잉여물품 관련	172
18. 보세공장 반입 물품 반출 절차	175
19.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품절차	176
20. 보세공장 반입 포장용품 잉여물품 처리 절차	177



AEO 179

1. AEO 제도	181
2. AEO 공인의 혜택	182
3. AEO 공인신청 방법	183
4. AEO 공인 신청서류 보완기간	185
5. AEO 공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186
6. 사후관리	187
7. AEO 관리책임자 역할 및 교육 이수	188
8. 변동사항 보고	189
9. 자체 정기점검 실시	190
10. 상호인정협정(MRA)	191

기 타 193

– **SOFA · 파르네** 195

1. 주한미군에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197
2.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198
3.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199
4. 주한미군 이사물품의 통관	200
5. SOFA 면세차량의 양도	201
6. SOFA 면세차량의 양수자	202
7. A.T.A. Carnet란?	203
8. 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대상물품	204
9.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205
10.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206
11.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207
12. 해외로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208
13.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통관	210

– **외환 신고** 213

1. 외화 휴대 반출	215
2. 해외 유학생 송금	216
3. 수출대금의 회수	217
4. 수입대금 휴대반출 지급	219

목 차

5. 제3자 지급 등	220
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절차	221
7. 우편, 특송, 화물을 통한 외환수출입	223
- 기 타	225
1.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227
2.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통계 조회 방법	229
3. 개별업체의 수출입 통관자료 확인	231
4. 권리구제 신청절차	232
5. 관세사시험	233
6. 관세직 채용	235
7. 탐지견 관리요원 채용	237
8. 해양수산직 채용	239
9. 외국 관세율	241
10. 각 국가별 여행자통관정보 등 외국세관 통관제도	242
11. 제주면세점(국내선)	243
12. 세관 근무시간	245
13. 직원 조회	246
14. UNI-PASS 이용	247
15. 수하물 기내 반입 허용 및 보안검색	248
16. 리펀드	249
17. 관세사 개업	250
18. 여권 등 물품 분실	252
19. 오류접수	253
20. 인터넷상에서 업무 관련 자료 찾는 법	254
□ 부 록	259
※ 관세상담 관련 연락처	261

FTA 등 특혜관세



1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질문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 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출국이나 경유국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 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 또한, “직접운송원칙”的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2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확인방법

질문

-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품목별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영역의 원칙 등)'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완전생산기준)
 -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세번변경기준)
 - 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부가가치기준)
 - 다.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가공공정기준)
 - 그 밖에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TA 특례법 시행규칙

- 별표4 : 한-싱가포르 FTA
- 별표5 : 한-EFTA FTA

→ 별표6 : 한-아세안 FTA

→ 별표7 : 한-인도 CEPA

→ 별표8 : 한-칠레 FTA

→ 별표9 : 한-EU FTA

→ 별표10 : 한-페루 FTA

→ 별표11 : 한-미국 FTA

→ 별표12 : 한-터키 FTA

→ 별표13 : 한-콜롬비아 FTA (미발효)

→ 별표14 : 한-호주 FTA

→ 별표15 : 한-캐나다 FTA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초기화면 좌측 상단 원산지기준(PSR)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 code 입력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



3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질문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답변

-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방식에는 아래의 2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 발급(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 한-칠레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 증명서로 정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양국 통일 양식을 사용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서명하여 발행합니다.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에 별도의 위임기관을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한-EFTA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를 작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한-인도 CEP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인도는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

-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정하고 있는 바 아세안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아세안회원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브루나이 : 브루나이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라오스 : 라오스 상공회의소(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 미얀마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필리핀 : 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s)
- 싱가포르 :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
- 태국 : 태국 상무부(Department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 베트남 : 베트남 통상부(Ministry of Trade)

○ 한-EU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물품가격 6,000유로 이하의 경우는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페루 FTA

-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발급이 원칙이나,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의 경우 수출자에 의해 인보이스, 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발효 후 6년 이후) 협정 발효 6년부터는 전면적인 자율발급 제도로 전환되어, 인증 수출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부속서 4나)으로 자율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미국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입자는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원산지증명 기재 항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권고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물품의 HS code 및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자
 - 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한-터키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의 원산지신고서와 유사하지만 인증수출자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호주 FTA

-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자율발급, 호주는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호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호주 상공회의소 (ACCI) 및 호주산업협회(AIG)이며,
- 수출자 및 생산자가 발급하는 자율발급의 경우 협정에서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고, 원산지증명 기재항목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원산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번호
 - 수출자(연락처 포함)
 - 복수선적 포괄증명기간
 -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 물품명세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 특혜 기준
- 비고(선택사항)
- 서약
-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발급일자

○ 한-캐나다 FTA

- 협정에서 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문 양해각서의 원산지증명서 양식(부속서 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서명권자를 지정 · 관리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행하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합니다.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갈음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류(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포함)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에 한함)

○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조회 방법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접속 》 FTA자료실 선택 》 협정별서식모음 선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2조(정의)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의9(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및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4 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

질문

- FTA별로 적용가능한 협정관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체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FTA별로 연도별로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정국가간 교역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각 협정별로 품목에 따라 즉시관세철폐, 단계적(5년, 10년 등)관세철폐, 관세철폐적용 제외 등 협정관세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협정세율 조회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해당 연도의 각 협정별 수입 관세율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대상 여부 및 협정세율을 아래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접속 》 현행법령 란 》 FTA 특례법 시행령 검색 》 별표확인
→ 별표1 : 한-싱가포르 FTA
→ 별표2 : 한-EFTA FTA
→ 별표3 : 한-아세안 FTA
→ 별표3의2 : 한-아세안 FTA 관세율(별표3)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
→ 별표4 : 한-인도 CEPA
→ 별표5 : 한-칠레 FTA
→ 별표6 : 한-EU FTA
→ 별표6의2 : 한-페루 FTA
→ 별표6의3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 별표6의4 : 한-미국 FTA

- 별표6의5 : 한-터키 FTA
- 별표6의6 : 한-콜롬비아 FTA (미발효)
- 별표6의7 : 한-호주 FTA
- 별표6의8 : 한-캐나다 FTA

2)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접속 》 좌측 상단의 “FTA 수입시 세율”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 code 입력

- FTA 상대국 수출시 적용되는 협정세율 조회 방법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접속 》 세계HS 정보시스템 선택 》 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5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질문

-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자유무역협정특례고시 별지1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FTA 특례법 제2조(정의)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절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6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질문

-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동별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한-ASEAN FTA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한-칠레 FTA : 서명일로부터 2년
- 한-페루 FTA : 발급일로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한-미 FTA : 발급일로부터 4년
- 한-호주 FTA : (기관발급) 발급일로부터 2년, (자율발급) 서명일로부터 2년
- 한-캐나다 FTA : 서명일로부터 2년

-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FTA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및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7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간 차이 발생

질문

-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 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분할신고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분할신고분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 관리 필요

8 운송요건

질문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의 한도를 함께 규정한 경우와 경유요건만을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직접운송요건과 경유요건을 함께 규정한 협정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협정인데, 운송 도중에 비당사국 영역에서 환적 등 특정 행위만 이루어지고 다른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직접운송요건이 없이 경유요건만 규정한 협정은 한-칠레, 한-미, 한-캐나다 협정인데, 한-칠레, 한-미 협정에서는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발송할 필요가 없고,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비당사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당사국 경유하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나, 한-캐나다 협정은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칠레 및 한-미 협정과 이 점에서 운송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9 양수도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

- A업체가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B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B업체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의 수입자가 다른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양수자도 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B업체가 양수받은 물품이 A업체가 양도한 물품과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는 달리, 수출자의 거래선 변경 등에 따라 수입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C/O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0 수리 ·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질문

- 2006년에 수입된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수출한 후 다시 국내재반입 하는 물품 및 수리비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면세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라,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 특례법 제5조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1 보세공장 제조 물품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 적용

질문

-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한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기본세율로 사용신고하고 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첨부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 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제1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원료과세) 제4항



12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 간 HS code가 다른 경우

질문

- FTA 협정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폐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폐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처리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처리방법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역내가치발생기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 ⇒ 특혜관세 적용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30%	역내가치발생기준 40%	
세번변경기준	완전생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특혜관세 적용 → 검증의뢰



13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질문

-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 한가요?

답변

- 201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14 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면제기준

질문

- 소액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 면제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정	금액	용도
EU	소포·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비상업용만 면제
EFTA	소포·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비상업용만 면제
미국	\$1,000 이하	제한없음
싱가포르	\$1,000 이하	제한없음
인도	국내법규 적용	비상업용만 면제
칠레	소포·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제한없음 (상업용은 송장에 원산지자격증명 진술요구 가능)
페루	\$1,000 이하	제한없음
ASEAN	FOB가격 기준 \$200 이하	제한없음
호주	\$1,000 이하	제한없음
캐나다	\$1,000 이하	제한없음

- 미화 1,000불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5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적용 가능 여부

질문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을 통관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사후협정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보정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 원본(한-미 FTA의 경우 사본 인정)
-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함)
- FTA 특례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6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보관 의무

질문

-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17 사후 검증

질문

- 사후검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원산지검증은 수출입자가 신고한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수출입 물품이 모두 검증의 대상이 되나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루고, 검증 주체는 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세관이 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이 하는 간접검증이 있으며, 검증 방법은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이 있습니다.
 - 원칙1 : 사후검증 원칙(수입신고 수리 후 실시)
 - 원칙2 : 서면검증 원칙(서면검증 후 현지검증 실시)
 - 원칙3 : 수입자검증 원칙(국내 수입자 조사 후 체약상대국 수출자 검증)

FTA	칠레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아세안	인도	페루	호주	EFTA	EU	터키
검증 방식	직접 검증 (미국은 섬유부분 간접검증 병행)	원칙 : 간접검증 예외 : 직접검증	직접, 간접 선택	직접, 간접 선택	간접검증 (검증 참관 가능)						

- 원산지검증은 FTA 체결국에 거주하는 기업과의 거래인지(거래당사자 요건), FTA에서 정한 양허대상 품목인지(품목/세율 요건), 원산지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행하였는지(원산지증명서 요건), 직접운송요건 및 비당사국 경유시 경유요건을 충족하는지(운송 요건), FTA 체결국의 원산지 물품인지(원산지결정기준 요건)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기록보관 요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 검증은 수입 당시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를 적용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수출입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자는 검증에 대비하여 자료보관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관세 등 추징 대상은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이므로 수출자와의 원산지증빙 및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 한-미 FTA 검증 유의사항

- 미국의 원산지 증명 서류 요청 방식은 세관 당국이 수입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구하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므로 수입자가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성실히 대응해야 함
-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자가 발행할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출자에게 자료의 제공 등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 한-EU/EFTA FTA 검증 유의사항

- 합리적 의심에 의한 검증요청이 많은데, 원산지신고서 소급발급 및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오류에 기인한 검증요청이 다수임.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므로, 형식에 맞지 않거나 제3자가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한-아세안 FTA 검증 유의사항

- 중소기업에 대한 검증 요청이 많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위반 사유로 특혜관세 배제를 통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 상의 서명, 인장 등 형식적요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요청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표기나 HS품목번호 상이, 중량, 금액 등의 정확한 확인 필요함.



1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질문

-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이 인증한 수출업체는 한-EU 협정에서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보유하거나 증명할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신청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9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질문

- 원산지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협정별 및 HS code 6단위에 대해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나뉘며, 인증의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하여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증제도로서, 본부세관에서 인증을 하며 모든 협정 및 품목에 전반적으로 원산지 증명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인증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므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모델, 규격만 다른 제품을 수출한다면 추가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공통점은 상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업의 합병 · 분할 · 폐업 후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



20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질문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한-EU FTA 협정의 혜택에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어느 시점의 발급분부터 유효한지요?

답변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있어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발급 FTA(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페루)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외에 발급할 때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매번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필증 등 5종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 발급기관의 심사 및 현지 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EU FTA에서는 수출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므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출에 대해 수입국에서 협정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반드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단, 6,000유로 이하의 수출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한-EFTA FTA는 원산지 인증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대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 작성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21 인증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면제 여부

질문

-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서류보관의무도 면제되나요?

답변

-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FTA 특례법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FTA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22 인증수출자가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재인증 필요 여부

질문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3년간 포괄 인증 형태이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HS code 6단위가 동일한 물품에 대한 포괄적 인증 개념으로, 신제품의 HS code(6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제품의 HS code가 인증받은 HS code와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르다면 추가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기존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인증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3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차이

질문

-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써, 최종물품이나 원재료의 생산자가 수출자나 최종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하였으나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써, 생산공정의 누적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 ·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공급일부터 12개 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수출용 원재료 국내 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2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질문

-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나, 원산지증명서 상의 발급일자가 선적일자와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발행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Soon thereafter)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를 개정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를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3근무일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라면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없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아세안 FTA 부록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1항, 제4항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3항

25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3국송장 관련 기재요령

질문

- 독일업체와 독일에서 수출계약하고 실제 생산 및 선적은 베트남에서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1란인 수출자란에 실제 제조자인 베트남회사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자인 독일회사를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 문의하시는 사항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상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계약 당사국-독일)에서 발행된 송장 “Third Country Invoicing” 관련 문의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1번 란(수출자)에는 베트남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또한, 물품의 수출자(베트남)는 원산지증명서의 13번 란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체크하고, 제3국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독일)과 같은 정보를 7번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부속서3 부록1 제21조)
- 이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9번 기재란의 가격은 수출국(베트남)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물품의 수출국(베트남)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원산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 접속》수출활용》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 원산지규정

26 한-아세안 FTA 환적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입증서

질문

-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대상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경우 직접 운송원칙의 입증서류 중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9조(제출) 및 제19조에서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 라. 그 밖에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

- 따라서, 상기의 서류가 모두 제출되는 경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예: 항공운송)에도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같이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운송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9조(제출) 및 제19조

27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가능 여부

질문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는데 시행일(2014.1.1)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14.1.1일 자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종전 6월)으로 개정 ·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12.31일 이전에 발급된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전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일 현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적용예시

'13.10.1.자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 '14.9.30.

관련법령

개정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상품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운영 절차(OCP)」 제10조

「FTA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2

28 한-EU FTA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

질문

-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 2013.2.23.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탁송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는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제1항 제2호

29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방

질문

- EU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일치하지만 지역코드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 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등 유효성 여부는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에 EORI NO 또는 VAT NO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사이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것입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접속 → FTA일반현황 → 공지사항 →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한-EU FTA 환적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질문

- 스페인 등에서 선적한 와인 중 일부는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품들은 국내 와인시장의 악화 등 사정으로 홍콩으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하면서 제3국 환적 증빙서류로서 홍콩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보세구역 미개장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문의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이동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어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한-EU FTA 협정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입물품에 대한 당해 수입계약과 관련된 운송조건과 인도조건 등이 수입국내에서 종료된 이후, 수입자의 여타 사정 등으로 타국으로의 반송수출 한 것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규정인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은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이 곤란합니다.

관련법령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31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질문

- 크로아티아가 EU회원국으로 추가되어 2014.5.26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정관세 적용시점 및 사후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발효일(2014.5.26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현재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방법과 같으며, 인증수출자부호 체계는 국가부호(2자리,HR)/세관부호(2자리)/인증수출자번호(3자리)/연도(2자리)와 같습니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⑧란 '원산지부호'에 'HR' 또는 'EU'를 기재합니다.
- 또한 2013.7.1일 이후 기본관세율 등 '한-EU FTA' 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사후신청을 통하여야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크로아티아 수출자가 2013.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택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FTA 특례법 제10조제3항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3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

질문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시작일보다 증명일자가 늦은 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 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이전 지침('12.6.19)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후 관할 FTA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로 인계하도록 하였으나,
- 2014.9.22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는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 1) 소급 발급 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 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일	적용

- 또한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되며,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해 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됩니다.

(예시)

구 분	원산지포괄 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 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관련 법령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14819)





33 아시아 · 태평양 무역 협정(APTA)

질문

-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

- 아시아 · 태평양 무역 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 협정인데, 기존의 방콕 협정(ESCAP)이 아시아 · 태평양 무역 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확대 · 개정되었으며 2006.9.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 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품목 열람 : 세계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접속 》 대한민국 》 HS code 입력 》 APTA 양허관세율표 확인
- 『아시아 · 태평양 무역 협정』(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국가의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 APTA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의5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APTA 원산지 결정기준

질문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 APTA 원산지는 협정문 부속서 II의 아·태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에 정해진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완전생산기준(A로 기재) [협정 제2조]

- 협정참가국(즉 원산지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인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B와 타국산부가가치비율 함께 기재) [협정 제3조]

- 당해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중국)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본선인도가격대비 4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원료, 원산지미상원료가격) / 본선인도가격 $\geq 45\%$

-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상 8번란(ORIGIN CRITERION)에는 B다음에는 비원산지국의 원료(원산지미상의 원료포함)의 부가가치비율을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55%이하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3. 누적부가가치기준(C다음에 누적가치비율을 기재) [협정 제4조]

- 당해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 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합유량(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협정참가국의 누적부가가치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 $\geq 60\%$

4.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특례총족(D로 기재) [협정 제10조]

- 다른 무역협정국가의 원산지기준보다 10%를 인하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데 즉 위에서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35%이상, 누적부가가치기준에서 50%이상으로 원산지 인정됨

수 입 통 관



일 반

1 UNI-PASS

질문

-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수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비용 없이 인터넷을 통해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시행)
 - UNI-PASS에 접속하려면 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상단 메뉴 중 패밀리사이트를 클릭하여 “UNI-PASS 전자통관”을 선택하거나, ② 인터넷 주소창에 “<http://portal.customs.go.kr>”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동 서비스 이용을 위한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공인인증서 발급
 -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방법은 인터넷통관포탈 상단의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전자인증안내를 클릭하면 인증기관의 연락처와 홈페이지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신청서 작성
 - 인터넷통관포탈 > 고객지원 > 이용신청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서 수입신고 등 업무가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이용방법 등은 인터넷통관포탈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관세청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국번없이 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2 통관고유부호

질문

- 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답변

-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 **통관고유부호 등록방법**
 -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신청은 수출자(수출화주, 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수입화주를 포함)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직접 등록신청할 수 없을 때 관세사 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Uni-Pass)시스템에 관련사항을 등록하거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의 부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인천공항세관(☎032-722-4347)에서 일괄처리 합니다.
- 통관고유부호(사업자용)는 “업체명 앞4글자 + 업체유형 1자리 + 본사설립년도 2자리 + 동일업체 구분 1 자리 + 본지사 여부 2자리 + 오류검증번호”로 구성되고, 통관고유부호(개인용)는 “P + 출생년도 중 끝 2자리 + 성별 1자리 + 발급년도 중 끝 2자리 + 부여번호 6자리 + 오류검증번호”로 구성됩니다.

관련법령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신청자), 제5조(신청절차)

3 수입신고 세관

질문

- 수입신고는 어느 세관에 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이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어떠한 시점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시점에 따라 신고할 세관도 달라집니다.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당해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 다만, 특정물품(한약재, 귀석과 반귀석, 고철, 해체용 선박, 수산물 일부,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활어 일부, 쌀 일부)은 원칙적으로 특정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5 참조)
- 부과고지대상 중고승용차는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세관) 및 제106조(특정물품의 통관지 세관 제한)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제3조(통관지세관의 제한)



4 납세의무자

질문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며, 수입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의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

5 수입자의 자격요건

질문

- 현행 법률상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세관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개인, 법인)이든 신고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 관련 수입요건을 두고 있는 국내법령에서 수입자의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그리고, 선물 등 개인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 특급탁송물품 등 목록통관 물품, 대금 거래 없이 수출입 되는 총 신고금액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인 경우 이외에는 각 본부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 이를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한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세무서에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인)

수출입신고건에 대한 통관고유부호 확인 철저(통관기획과-2674 '08.5.23)



6 B/L 분할신고

질문

-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할 수 있나요?

답변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 참고로 여러 명에게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B/L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반대로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장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B/L 분할신고 및 수리)

7 수입신고 시기

질문

-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 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① 출항전신고

- 출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출항전신고가 가능하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입항전신고

-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선(기)적지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 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④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요건

- 다음의 각 호의 물품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 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관련 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 및 제6조(신고의 시기), 제7조(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신고의 요건)



8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질문

-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통상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자료교환방식(EDI) 또는 인터넷 방식(UNI-PASS)],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 신고시 제출함)
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여,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9.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10. 할당 · 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 · 치어의 번식 · 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그렇지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종이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키퍼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2.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3.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4.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 나. 특급택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
 - 다.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 면세)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 라.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 마.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 아.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5. 부과고지 대상물품
 6.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7.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8.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9.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입신고 방법) 및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9 수입신고 취하

질문

-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고시 별지 제6-2호 서식)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합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반송합의사항 등 증비서류 징구)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멸실확인서, 멸각승인서 등 징구)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1호 또는 2호의 방법과 동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과부호 변경 : 위험물, 검역, 관리대상화물, 통관지제한, 하선장소변경
 - 입력오류 : 세관부호, 징수형태, 납세의무자, 이중신고, 선용품, 보세공장, 보세운송물품 신고방법
 - 기타의 경우에는 본청 사전승인 후 처리
- 그러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제1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
 수입신고취하 업무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5668, 2010.7.9.)

10 사전세액심사

질문

- 사전세액심사란 무엇이며 어떤 물품이 이에 해당합니까?

답변

○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 세액심사”와 “사후 세액심사”가 있으며,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 단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21조(사전세액심사)

11 신고지연 가산세

질문

- 신고지연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변

-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율은 관세법시행령 제247조 제1항에서 정한 율에 의하여 산출하며,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산세 징수대상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 ②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 * 2015.10.31. 현재 설탕, 분산성 염료 중간체, 분산성 염료, LPG 4품목 지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3항 및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가산세)



1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질문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 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리전 반출 건의 징수형태가 “00”(과세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전 반출시 납세신고한 세액납부 및 추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한 후 수리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형태가 “24”(부과, 사후납부로서 담보제공면제), “43”(월별납부, 담보제공면제)과 같이 담보제공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 지침』(공정무역과 -1476, 2008.6.20)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 등 일반특혜 양 허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실행관세율 상당) 제공후 신고수리전 반출허용.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15일 이내

에 C/O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

관련 법령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신고수리전 반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수입신고수리전물품반출승인절차시달(통보)(통관기획 47210-954, '00.10.26)”



13 수입 요건 및 절차

질문

- 수입시에 구비해야 하는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의 품목분류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번호(세번, HSK) : 국제간에 공통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어떠한 물품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 분류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14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질문

- 세관장 확인대상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 세관장확인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대상을 규정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방위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먹는 물 관리법, 종자산업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5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질문

-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물품 고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변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등)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 또한,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지방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 기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 ·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세법 제226조 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허가 ·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6 샘플 수입신고

질문

- 상용견품(샘플) 수입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샘플인 경우도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답변

- 상용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 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말합니다.
-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품이라는 표시)로 처리하거나, 극소수인 경우는 반입사유, 물품가격 등을 판단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승인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류, 의약품류, 의료용구, 전기용품 등이 시음, 시식, 투약, 대리점 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견품인 경우는 수입승인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 확인대상입니다.
-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견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될 수 없는 상태 → 견품인정수량 범위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 과세가격 미화 250불 미만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기타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관련 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수입승인의 면제)



17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

질문

-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입금지 품목이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제234조 각 호의 물품(수출입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18 성인용품 수입

질문

- 성인용품 수입이 가능하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상담시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기준 방식

관세청은 성인용품 통관관리방안 시달(통관기획과-1684,2012.4.4.)을 통해 (원칙적으로) 성인용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 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 품과 동일한 물품 (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또는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제조자)가 동일인일 것)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

< 성인용품 통관업무 처리지침 (2014. 6. 30.시행) 개정내용>

-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통관지세관 제한
 -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
-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 확대
 - 현행 기준 + 통관지세관 통관심사위원회 결정
 - (신 설)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
 - (설치)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설치
 -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및 김포세관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심사
- 성인용품 관련 기 판결(결정) 물품 D/B 구축 및 활용
 - 심판원 등에서 인용 결정된 성인용품 관리 DB를 구축하여 동일한 성인용품이 거듭하여 통관보류 되지 않도록 개선
 - 기 판결(결정) 성인용품을 물품형태(모양, 색깔 등), 세관별로 분류하여 D/B구축 및 활용

관련법령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성인용품 통관관리 방안 시달(기준 : 통관기획과-1684, 2012.4.4)

성인용품 통관업무 처리지침 시달(개정 : 통관기획과-3557, 2014.06.19)



19 CITES 물품 수입

질문

- CITES는 무엇이며, 해당물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하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성된 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 별표 5, 6, 7, 8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 다양성과(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48)에 확인하면 됩니다.
- ※ 1.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교란야생동·식물,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각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 www.me.go.kr/hg, 031-790-2846)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20 곤충류 수입

질문

-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가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딱정벌레류, 사마귀류 또는 바퀴벌레(통상 HS 0106)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동물에 해당되므로,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됩니다.

21 애완동물 수입

질문

-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67-1700)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CITES 협약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 www.me.go.kr/hg, 031-790-2846) 또는 지방환경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전갈 및 독거미의 수입통관

질문

- 애완용으로 전갈이나 독거미를 수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 독거미, 전갈 등의 경우 학술연구용 등이 아닌 판매용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입통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독거미 등에 대한 수입통관 심사철저 지시”(청 통관기획 47230-7176호, ‘01.12.03.)
 -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동물(곤충, 응애 등의 마디발동물,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거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이므로 통관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학술연구용 등이 아닌 판매용 독거미, 전갈(HSK 0106.00-9000) 등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니 이와 같은 물품이 수입통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독거미, 전갈 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우리 고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세관통관부서에서 관세청에 질의한 회신결과(청 통관기획과-2422호, ‘06.5.16, 청 통관기획-2059호 ‘06.4.26.)
 - 거미의 독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맹독으로서 거의 모든 거미가 이 독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독의 내포의 양에 따라 사망에 이르거나 살이 썩거나 살이 부어오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독거미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임.

23 총포류 등 수입

질문

- 총포 · 도검 · 화약류 수입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 총포,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 산탄엽총, 도검, 문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24 육류 수입신고

질문

- 쇠고기 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 등은 무엇입니까?

답변

- 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방역부, 031- 467-1700, 1762)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식용 활어 수입

질문

-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어떤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답변

-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원장포함)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 문의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www.nfqs.go.kr , 031-929-4702)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관련한 절차, 서류 등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1577 -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커피, 차류 등 수입

질문

- 커피나 차류(Tea)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사항은 아니지만, 포장용기 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납부대상인 제품은 한국환경공단(www.kepco.or.kr, 032-590-4173~8)에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식용 식물류 수입

질문

- 한약재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에 신고하고 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약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의 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식용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 쌀의 수입통관

질문

- 쌀을 수입하고 싶은데 관세율 및 혜가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쌀(멥쌀, 정미된 것)은 HSK 제1006.30-1000호에 분류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www.mafra.go.kr, 044-201-1816)의 양허관세 적용물량 추천을 받은 경우는 5%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쌀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의 수입식물 검사합격증과,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의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을 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9 과일 수입

질문

- 과일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031-420-7688)에 신고하고 검역 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 ※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경유하는 것도 포함)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 화장품류 수입

질문

- 향수·화장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화장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6)에 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전기용품 수입



질문

- 전기용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50V 이상 1,000V 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이면서 의료용구인 전기맞사지기 등 타법령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해당법령에 의한 수입요건도 구비해야 합니다.
-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인증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의료용구 수입

질문

- 의료용구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www.kmdia.or.kr 02-596-7404)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www.kodda.co.kr, 02-754-5921)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 의료용구이면서, 전기용품인 전기맞사지기 등 타법령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해당법령에 의한 수입요건도 구비해야 합니다.
 - 기술표준원(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대표전화 1899-7654) 등
 - 그런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세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란의 명의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 ※ 의료용구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의약품 수입

질문

-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의약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http://www.kpta.or.kr)(www. kpta.or.kr, 02-6000-1841~6)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펼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고객센터 1577-1255)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4 선박 수입

질문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이라 함은 임차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 수입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동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35 승용자동차 수입

질문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과 규제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중고자동차이든 신차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기본관세율 8% 및 2015년 적용 개별소비세율 기준)

- **배기량 2,000cc 초과** :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과세가격에 약 26.52%의 제세)
- **배기량 2,000cc 이하** :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과세가격에 약 26.52%의 제세)
- **배기량 1,000cc 이하**(정원 8명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m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 : 관세 8%, 부가가치세 10%(과세가격에 약 18.8%의 제세)

* 개별소비세 인하로 탄력세율 3.5%(2015.8.27~12.31 수입신고분) 적용

-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 (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 (10%)

-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신차, 중고차 모두 해당)에 같은 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수입통관 후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세관에서는 관세징수 등 통관업무만을 담당하므로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인증은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등록과 인증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수입전에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자기인증, www.ts2020.kr, 1577-0990)

* 배출가스, 소음인증

- 개별인증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032-590-5000)

개별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정식인증 : 교통환경연구소 (www.nier.go.kr, 032-560-7637, 7639)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30조(자기인증)

- *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이라 함)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인증)

소음진동규제법(소음인증)

36 중고승용자동차 수입

질문

- 중고승용차를 수입시 블루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나요? 중고승용차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 중고승용차는 가격신고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수입신고 수리전에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입니다.
- 관세율표 제8703호 중 「별표1」의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에 대해서 공정, 투명한 과세를 위해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됩니다.
- ※ **이사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결정된 기간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 **통관지세관 제한**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용당세관, 마산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
- **부과고지**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 품목분류 및 세율을 결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
-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산출한 가격 이상인 경우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1. 제조회사 · 모델 · 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 가격. 다만, 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3.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 위 각 호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과 List Price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우선 적용. 단,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이 List Price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List Price 가격 우선 적용
- 2) 산술평균한 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과 List Price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당해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통관지세관장이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경매낙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한편,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 각 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 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1. 구매경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입 가격자료 등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
2.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내역(사진 등), 수리사실 및 관련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적출국의 공인기관 등에서 확인한 사고이력 기록(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 사고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7 오토바이 수입

질문

- 오토바이 수입요건과 납부할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 후 자동차관리법의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 바, 아래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자기인증, www.ts2020.kr, 1577-0990)

* 배출가스, 소음인증

- 개별인증 :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032-590-5000)

개별자동차 :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 정식인증 : 교통환경연구소 (www.nier.go.kr, 032-560-7637, 7639)

○ 오토바이 적용되는 세율

- 배기량이 125cc초과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관세 8%,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배기량이 125cc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 개별소비세 인하로 탄력세율 3.5%(2015.8.27~12.31 수입신고분) 적용

○ 관세등 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②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 × 개별소비세율(5%)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38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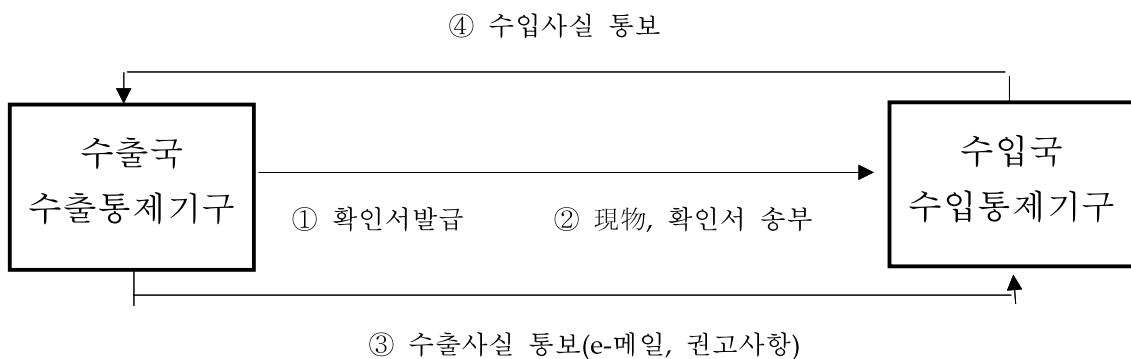
- 다이아몬드 원석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에 따라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미국, 일본 등 42개국과 EC공동체)이외의 국가 와의 다이아몬드원석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수출시에도 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국은 해당 자료를 일정기간(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제대상품목 : 다이아몬드 원석 HS 7102.10, 7102.21, 7102.31 3種
- ※ 다만, 중계무역 또는 환적등을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여 보세 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도 다이아몬드원석을 수입하는 경우 킴벌리프로세스 증명서 원본을 수입신고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입시 세관검사 직원은 포장박스상의 수출국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신고서와 증명서상의 원산지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수리 후 증명서원본을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 무역안보팀)에 7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 킴벌리프로세스이행체제(KIMBERLY PROCESS CERTIFICATE SCHEME)는 아프리카 내전지역(앙골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에서의 「분쟁다이아몬드(Conflict Diamond :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반군이 군비조달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제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의 기구이다.
 - 현재 아프리카 주요생산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가공, 소비국 42개국과 EC공동체가 동 협의체에 가입(우리나라는 '02.11.4일 가입)

관련 법령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신고시 제출서류)



<별표 2-1>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2013.12.31. 현재 81개 회원국)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유럽공동체 (the European Community: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가나,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콩고공화국,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카메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파나마, 말리

* 베네수엘라는 향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을 중지함

*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UN 제재하에 있으며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지 않음



<김벌리 프로세스 증명서 예>

 EUROPEAN COMMUNITY 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p>The rough diamonds in this shipment have been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for rough diamonds.</p>													
<p>Country of Origin: * United Kingdom Number of Parcels: 6</p> <p>Country of Provenance: India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K. Co. Ltd.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6, 7 Lot. 98 Block 32-33 Hatten Garden London EC1N 8DL Name and address of certifier: 7 Lot. 98 Block Samilong-ku, Inchon, S. Korea</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HS classification</th> <th style="text-align: left;">Carat</th> <th style="text-align: left;">Value (US\$)</th> </tr> </thead> <tbody> <tr> <td>7102.10</td> <td>*****</td> <td>22,587.01</td> </tr> <tr> <td>7102.21</td> <td>654.29</td> <td>*****</td> </tr> <tr> <td>7102.31</td> <td>*****</td> <td>*****</td> </tr> </tbody> </table>		HS classification	Carat	Value (US\$)	7102.10	*****	22,587.01	7102.21	654.29	*****	7102.31	*****	*****
HS classification	Carat	Value (US\$)											
7102.10	*****	22,587.01											
7102.21	654.29	*****											
7102.31	*****	*****											
<p>THIS CERTIFICATE Issued on: 25.Oct.94... Expires on: 24.Drs.94...</p> <p>Signature of Authorised Officer</p> <p></p>													
<p>Stamp of Importing Authority</p>													

39 수입물품 검사

질문

- 수입신고시 세관검사하는 이유가 뭐고 검사비용은 왜 화주가 부담하나요?

답변

-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 세관검사는 ①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②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③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 관세법 제173조 제3항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규정
 - 검사생략된 경우와 비교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검사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

관련 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장 제3절(물품검사), 제31조제7항(검사비용)



40 고철 및 비금속 설의 수입

질문

- 고철은 어떤 절차로 수입하며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

- 고철(비금속설)이라 함은 사용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합니다.
 -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 ※ 고철화 작업이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되었으나 고철이외의 타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200KW 이상의 전기로, 10 M/T 이상의 용해로 또는 시간당 10M/T 이상의 가열로 시설(공장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함)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 전기로, 용해로 또는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 중 세관장이 당해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
- ※ 참고로,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당해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장 제1절(고철 및 비금속설)

41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관리

질문

- 수입신고수리물품 중 해당물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반입명령인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물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을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월이 경과하였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운송료, 보관료 및 기타 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 부담한다.
-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명령수령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합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입명령수령인이 부담합니다.
 1. 보완·정정후 반출
 2. 반송 또는 폐기

관련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수입신고수리후 확인) 제1절(의무불이행물품 등에 대한 관리)

42 수입신고필증 진위확인

질문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타인의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지요?

답변

- 타인의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진위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화면 중간 “조회서비스” 중 “수입신고필증 검증” 서비스 코너에서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조회 화면에서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 사업자 등록 번호, 원산지, 품명, 순중량, 총 과세가격, 총 세액 합계를 전부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로의 출력은 제한됩니다.

43 관세사

질문

- 수입신고를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야 하나요? 잘 아시는 관세사를 소개시켜 주세요.

답변

- 관세사 위임

- 수입신고는 수입화주도 직접 관세청의 통관포털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세사에게 그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세사 신고건 및 화주 직접 신고건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업무가 처리됩니다.

※ 관세사 수수료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통관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수수료는 관세사가 수입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사 안내

- 공무원이 특정 관세사를 직접 알선하거나 소개할 수 없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는 한국관세사회로부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 접속후 회원사안내 > 회원디렉토리에서 지역별 검색

- 서울지부(전화번호 : 02-547-9714~6)
- 부산지부(전화번호 : 051-988-0011)

- 관세사

-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입통관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데,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사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수

1 보정

질문

-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답변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은 연 1천분의 25입니다.
- 보정이자 =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날 ÷ 365) × 25/1,000}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세액정정 및 보정) 제5,6항

2 수정신고

질문

-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 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1, 2를 합한 금액)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관련 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및 제42조(가산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수정신고)

3 내국세 가산세

질문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종전에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7. 1. 1.부터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는 보정제도가 없지만 보정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보정제도가 적용되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보정이자만을 부과됩니다.

1) 무신고

-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경우 60%

2) 과소신고

-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일 경우 60%

○ 무신고와 과소신고 구별

- 필수의 경우 : 무신고에 해당
- 세목별로 무신고, 과소신고 구별

※ 수입신고 1건에 대하여 3개의 세목(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 부과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는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 부당의 개념(국세기본법 시행령) => 범칙추정 대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 부칙 제7조(경과규정) 제11항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 · 징수)



<도표로 정리>

1. 정정, 보정, 수정, 경정(경정청구)

구분	근 거 규 정	사 유	납부기한
정정	법§38(신고납부)④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 과부족 인지	당초의 납부기한
보정	-법§38의2(보정) -영32의4(세액의 보정)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보정신청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
수정신고	법38의3(수정 및 경정)①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
경정청구	법38의3(수정 및 경정)②,③,④	① 경정청구 : 신고납부한 세액 과다 ② 경정 :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 인지	- 경정고지의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15일以内

2. 정정방법별 가산세부과여부

정정방법	정정주체	정정시기	가산세 부과여부		비고(관세법상)
			이자	가산세	
정 정	납세의무자	납부전	X	X	
보 정	납세의무자	신고납부후 6월 이내	○	X	이자율: 연 1천분의 25 - 추징시(보정가산금):법 38의2(보정)⑤, 영32의4(세액의 보정)④(영 56조 준용) - 환급시(관세환급가산금):법 48(환급가산금), 영56(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수 정	납세의무자	신고납부후 6월 이후 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	○	부족 세액 10%(부당 40%)+ 1일 3원/1만원[법42(가산세) 및 영39(가산세)]
경정(+)	세관장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	○	○	부족 세액의 10%(부당 40%)+ 1일 3원/1만원[법42(가산세) 및 영39(가산세)]
경정(-)	세관장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12.1.1. 이전 은 3년)	○	X	직권환급(환급가산금)(연 1천분의 25)[법48(관세환급가산금), 영 56(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3. 가산세율 구조 비교



관세법 가산세율	국세기본법 가산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경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10%- 기간이자 : 부족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 이자율※ 이자율 : 1일 3/10,000	<p><신고불성실 가산세></p> <table><tr><td>○ 과소신고</td><td>○ 무신고</td></tr><tr><td>부 당 일 반</td><td>부 당 일 반</td></tr><tr><td>40%</td><td>10%</td></tr><tr><td>40%</td><td>20%</td></tr></table> <p>※ 국제거래인 경우 60%</p>	○ 과소신고	○ 무신고	부 당 일 반	부 당 일 반	40%	10%	40%	20%
○ 과소신고	○ 무신고								
부 당 일 반	부 당 일 반								
40%	10%								
40%	20%								
	<p><납부불성실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납세액 × 경과일수 × 가산세율※ 가산세율 : 1일 3/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정(신고납부후 6월 이내)<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정이자만 부과※ 이자율 : 현재 연 1천분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법상 보정제도 적용('07.6.1이후) 관련지시 : 청 심사정책과-2614('07.5.30)○ 보정제도 없음 ⇒ 수정신고로 처리○ 가산세 없이 관세법상 보정 이자율만 적용								

4 관세납부방법

질문

-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답변

-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영수증은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은 차이가 있음)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가능

③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 ※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고지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④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5 납부기한 및 체납

질문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체납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증가산금)을 60개월의 범위내에서 부과
 - ※ 체납관세(내국세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증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음
 -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 수입통관시 서류제출생략업체 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 지정 등
 -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 지정 중단 및 직권 정산사유
 - 담보제공대상이 되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의 만료일이 되며, 토요일이 기한의 만료일인 경우 은행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그 다음 은행근무일이 만료일
 - 전산장애시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및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6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질문

-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경우 그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므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토요일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질의와 관련으로 대체공휴일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3.12. 개정되었으며 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2014년부터 설날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연휴(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연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 문의하신 바와 같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 중에 있으면 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되며 이때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납부기한 마지막 날인 경우에도 은행이 휴무이기 때문에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3항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4(기한의 계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7 과오납환급(경정청구)

질문

- 세관에 납부한 과오납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과오납금의 환급은 차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취지에서 발전하여 납세자는 과오납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국가가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거나 세관장이 통지하는 방법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의한 환급 : 환급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의 확인에 의한 환급 : 그 금액과 이유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
-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12. 1. 1. 이전은 3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오납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과오납환급신청은 청구할 수 있는 날(경정결정일, 차오/이중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과오납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의 환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가산금 · 가산세 또는 채납처분비의 과오납금
 -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 중 세관장이 징수한 것
- 환급신청권자는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가 되며 환급청구권은 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류,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과오납금 환급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이 있는 경우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관세 및 제세 충당 → 충당 시 권리자에게 통지
 - 신청에 의하여 충당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 및 제세 충당 → 충당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 충당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 결정이 있는 날까지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
 - ⇒ 2015.3.6. 기준 : 연 1천분의 25
 - 다만, 우편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에는 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4항,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8 위약환급

질문

-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입신고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출신고서에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용서와 당해 물품의 계약서류(Invoice) 및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전문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개인 해외직구 반송의 경우 ① 계약내용과 다른 것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송도 인정해 주고,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세관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14. 6. 16. 시행)
- 환급신청은 “과오납/위약물품 환급신청서”에 상기의 계약내용을 확인받은 수출신고필증과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환급요건)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질문

-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답변

-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 이상인 관세의 경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세징수권 :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의 일종,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음)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단, 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 보정신청과 함께 납부하는 관세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관세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부과고지하는 관세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즉시반출신고물품 신고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관련법령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10 징수최저한 금액

질문

-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최저한은 얼마입니까?

답변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징수최저한 금액으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건이 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경우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 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를 징수하게 됩니다.
- 징수최저한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11 관세납부제도

질문

- 관세납부제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관세납부제도(징수형태)의 종류에는 신고납부와 부과고지가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세보류 :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
 - 2) 수리전납부 : 담보제공 생략대상 또는 신용담보등의 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이며, 제세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됨
 - 3) 사후납부 : 개별담보 제공, 신용담보업체, 담보제공면제 등의 경우이며, 수입신고수리 후 일정기간내에 제세를 납부하면 됨
 - 4) 사후정산 : 환특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경우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 단위로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징수형태 부호>

- | | |
|-----------------------|---------------------|
| 00 과세보류 | 01 수리전반출 일괄고지 |
| 11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 | 12 신고, 사후납부(개별담보) |
| 13 신고, 사후납부(포괄담보) | 14 신고, 사후납부(담보제공면제) |
| 18 신고, 사후납부(특송포괄담보) | |
| 21 부과, 수리전납부 | 22 부과, 사후납부(개별담보) |
| 23 부과, 사후납부(신용담보) | 24 부과, 사후납부(담보제공면제) |
| 33 사후정산(환특법에 의한 일괄고지) | |
| 43 월별납부 신용담보 | |
| 53 복합납부 | |

관련 법령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징수형태)



12 담보의 종류

질문

- 담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및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전물·공장재단·공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위 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 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라. 양도성 예금증서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중 납세담보제공·양도 또는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위 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마.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 바.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 사.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
 - 아. 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 개별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제7호에 따른 보증서의 납세담보기간은 납세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시행령」 제2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제3호의 경우는 “가”부터 “다”까지 및 제7호의 경우는 “가”(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담보의 종류 등)



13 포괄담보

질문

- 포괄담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정 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와 담보물을 관할 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위 담보물 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4호의 담보물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등의 일괄납부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포괄담보물은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여야 합니다.
- 일괄납부용도의 담보물은 각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등의 환급의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각 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 금액·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관련법령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장(포괄담보)





14 담보제공대상

질문

- 어떤 경우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야 하나요?

답변

- 2010년 7월 1일부터는 담보제공의 범위에 속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 또는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벌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 또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 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수입 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최근 1년 이내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 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 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 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마.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사.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다만, 담보제공특례자 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자이거나 사전에 관할세관장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받은 자는 해당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담보제공 대상), 제5조(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15 신용담보업체 지정

질문

-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용담보업체란 세관장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업체로서 환특법상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만 지정됨
- 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절차는 신용담보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에게 제출하면 심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것)(생략가능) 1부
 3. 최근 2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4.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전산시스템 조회 가능) 1부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신용담보업체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벌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환급실적 등이 있는 제조업체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신용담보한도액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납부기간	설정기준
1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1/12
2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2/12
3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3/12
4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4/12
6월	전년도 환급실적 등 × 6/12

1. 관할지세관장은 업체의 환급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1년간의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포괄담보나 개별담보 제공시는 제공된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환특법에 따른 신용담보)



16 월별납부업체 지정

질문

-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업체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 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 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2. 수입 및 납세실적 등 자료(별지 제2호)
-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부호 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월별납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및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등

17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질문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가 되는지요?

답변

-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다음과 같은 시기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수입세금 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제물품 :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수입계산서)

관련법령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3항



18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질문

- 이미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수입신고수리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입신고 수리 당시 타사 명의로 착오신고, 수리전에 사업자 내용변경·양수도·법인 합병 등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수입신고 수리 후(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사업자 내용 변경·양수도·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교부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시의 납세의무자로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정교부 합니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법 규정에 의한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 의무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수입신고수리후납세의무자(수입세금계산서의수입자) 정정업무지침(심사정책47230-540,
'00. 5. 29) 첨부자료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질문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이 제한되는지요?

답변

-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3. 7. 26.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원칙적 발급제한 대상)

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① 관세조사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 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 이 법 시행일 이전 관세조사 등의 통지·확인업무 착수 후 미종결되어 이 법 시행後 수정신고·경정시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 그렇지만, 위 '가, 나'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발급됩니다.(발급제한 예외)

가.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된 경우
- 마.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입세금계산서) 제3항, 제4항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3.7.26)

20 체납자의 출국

질문

-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

답변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제한(금지, 정지) 대상자입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 「관세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출국제한된자가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제한 해제 요청을 합니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관세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관련법령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체납정리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 제32조

남 북 교 역

1 북한산물품 중 통일부승인 품목

질문

- 반입시 통일부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품등(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의 반출·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3.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3조(적용범위),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 통일부 승인절차에 관한 문의 :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민원센터 1577-1365)



2 북한산 물품의 요건

질문

- 북한산 물품으로 관세 미부과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답변

- 북한산 물품이어야 합니다.
 - 반입신고시에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써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다만,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즉,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보아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된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습니다.

관련 법령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원산지 확인) 및 제25조(직접운송원칙)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임.

3 북한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질문

- 북한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위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관련법령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4 북한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질문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로 정한 물품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경우라면 표시된 대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문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제3국인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경우의 원산지표시

- 내수 판매시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으로 인정
 - 국내산은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등으로 표시
 - 북한산은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개성) 등으로 표시
-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의 원산지 규정 기준에 적합하게 표기

관련 법령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5 북한 임가공물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질문

- 북한에서 임가공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답변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입니다.
- 국내의 업체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은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내국세 등)

지식재산권

1 병행수입이란?

질문

- 병행수입이란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 병행수입의 의의 및 배경

-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동 제도는 「상표법」 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5년 1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병행수입가능요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

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병행수입이 안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부터 침해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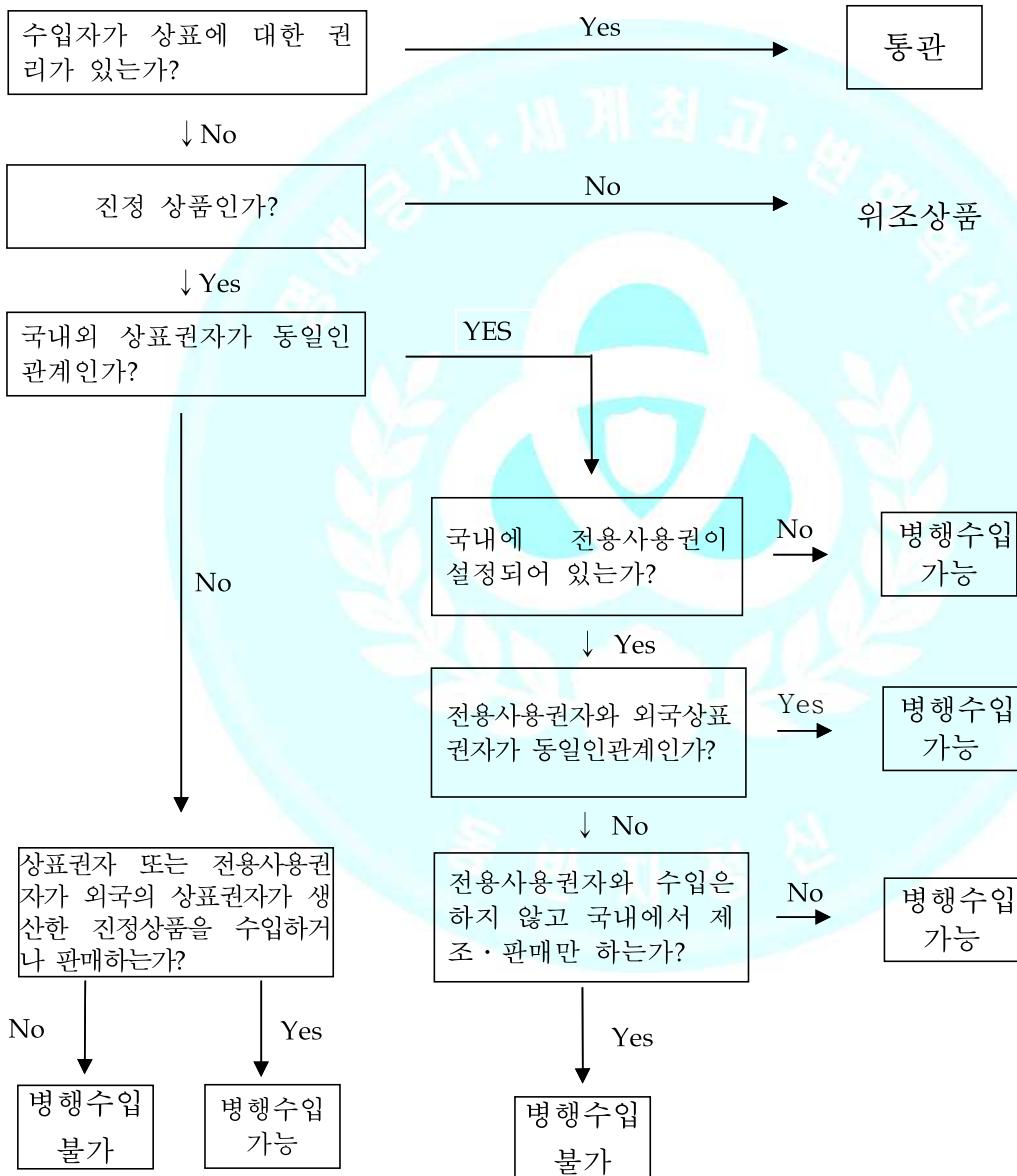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 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병행수입가능 확인절차(도해)





2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질문

- 병행수입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 병행수입가능 품목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한 경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후 화면상단 패밀리사이트 클릭, Uni-Pass 중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클릭> 상표권등록조회 > 상표명 등을 입력, 검색
-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병행수입 가능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그 근거가 설명되어 있음. 만약 “상표권침해우려물품수출입통보대상”이라면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고 “일부 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하단에서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지정상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세관에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세청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특허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3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질문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소비자가 구매할 병행수입물품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되었음을 관세청장이 인증해 주는 제도로 2012. 5.21부터 시행중이며,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정보(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통관세관)를 통관표지(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병행수입업체의 통관인증서비스 이용 절차
 1.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 :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특수통관과)에 신청서 등 제출
 2. 확인 후 통관표지 첨부업체 선정 : 신청서 제출 업체의 관세법 위반, 체납 여부 등을 확인(관세청)
 3. 통관표지 교부 신청 및 수령 : 첨부업체는 해당물품 통관 후 통관표지 교부신청 및 수령(교부기관)
 4. 통관표지 부착후 판매 개시 : 통관표지를 판매물품에 부착 후 판매 개시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부착한 병행수입물품 중 당해 수입업체가 표지첨부를 희망하는 물품에 적용합니다.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된 상표
 2. 그 밖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상표
- 표지첨부업체
 1. 병행수입물품 수입업체
 2.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병행수입물품에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표지를 첨부하려는 판매업체

관련법령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4 위조상품 수출입 처벌

질문

-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위조상품”(속칭 짹통)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가끔 명품구매자나 수입자가 구매한 물품이 위조상품인지 확인해 달라거나 확인해 주는 부서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청(밀수신고 : 국번없이 125)이나 특허청(위조 상품제보센터 : 1666-6464)에서도 당해 신고접수된 상품이 위조상품인지를 확인(주로 상표권자에게 확인 의뢰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어떤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만을 의뢰받아 확인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5 상표권 등록 방법

질문

- 통관단계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이여야 세관에 상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이여야 합니다.
-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등록한 자가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당해 상표권을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협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포탈(<http://www.e-tipa.org>)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2. 상표등록원부 등본 사본 2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시)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5. 기타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불법복제물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6. 관세청 지식재산권 고시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상표권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후,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표권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일간(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입니다.
- 신고된 상표권은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표권 신고내용 중 제2조(정의) 제5호 및 제5조의 규정(병행수입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진정상 품 수입이 제한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지 등을 위해 세관처리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6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

질문

-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된 경우의 통관보류요청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제외, 다만,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이내에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하 같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요청

- 상표권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국내반입예정일 또는 수출신고예정일의 20일 이전부터 수출입신고수리전까지 통관보류요청서를 통관예정지세관에 제출하며 이때에도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 통관보류기간

- 통관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공휴일제외)까지이며, 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원제소(가처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기간 연장요청을 한 경우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통관허용요청

- 수출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해당 물품)의 120%를 담보로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통관보류요청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통관허용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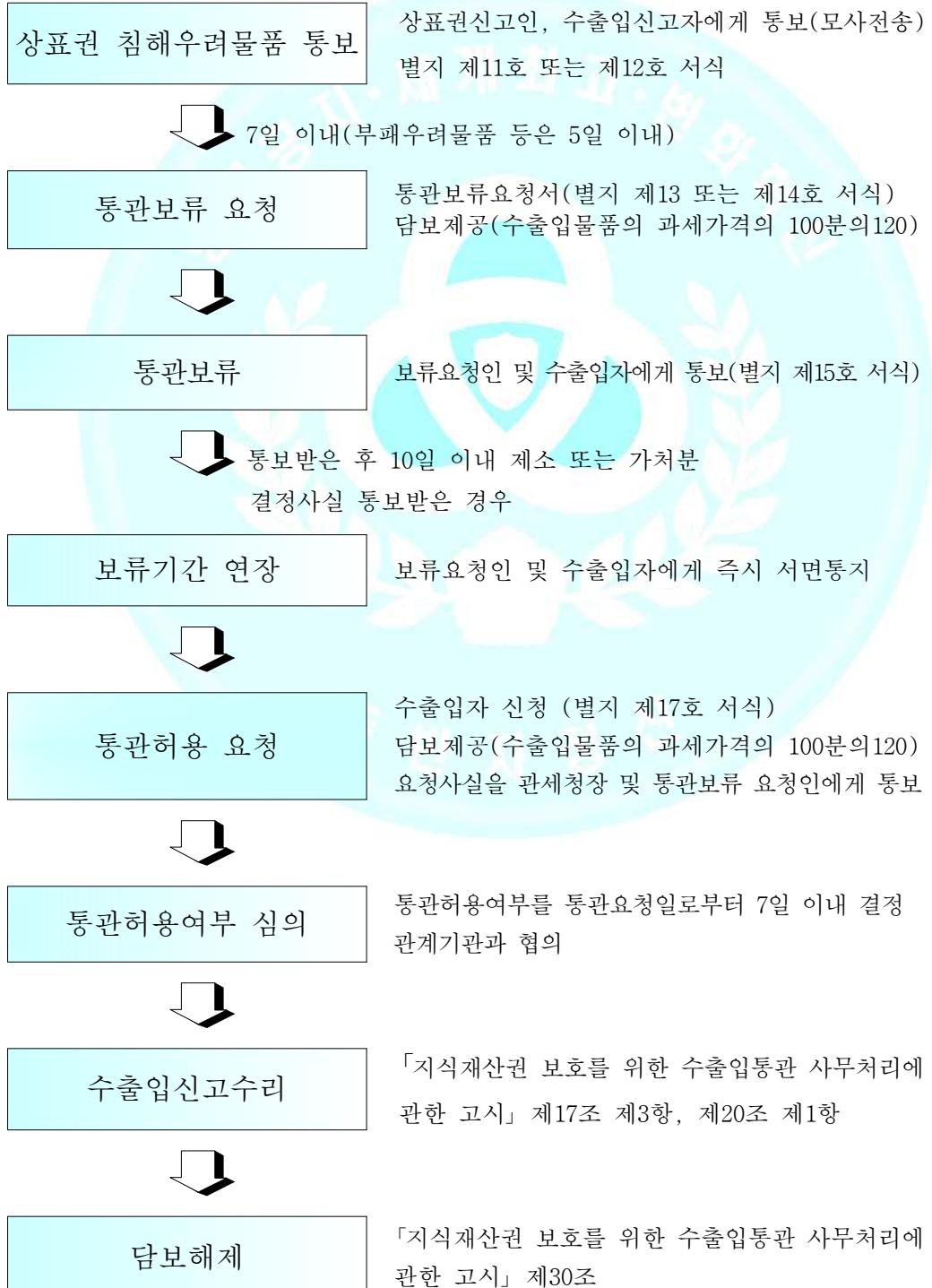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제3항 내지 제7항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통관의 보류) 내지 제241조(담보제공 등)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통관보류 요청 등), 제4장(침해 여부 심의 등)



※ 상표권 등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흐름도)





자주 찾는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방법
- 상표권 검색방법(병행수입가능여부) -

- 관세청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신청을 받아 상표권관련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일정요건이 되는 경우 병행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세관)의 상표권관련 정보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오른쪽 상단 > 패밀리사이트 > UNI-PASS전자통관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로 직접 접속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상표권 세관신고정보에서 조회 가능)

- 「상표명」란에서 찾고자 하는 상표를 빈칸에 입력하시고 **조회** 키를 누르면 그 상표의 등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POLO상표를 검색하면, 8건의 POLO 관련 상표가 조회되며, 이중에 상표 등록번호 “0410769”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검색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코드 : 0727
- 권리의 종류 : 상표권
- 권리의 국적 : 미국
- 권리자의 성명(상호) :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
- 상표등록번호 : 0410769
- 신고유효기간 : 2013/10/06 ~ 2016/10/05
- 상표명 : POLO BY RALPH LAUREN
- 지정상품 : 제14류 : 보석목걸이, 보석브로치, 보석반지, 머리핀(귀금속제), 귀걸이(귀금속제)외 다수

○ 도형존재여부 : 존재

○ 도형 : POLO

○ 병행수입가능여부 :

- 가능
-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와의 관계 : 동일인()
-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와의 관계 : 관계없음()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 : 해당없음()

○ 지정상품

- 병행수입가능여부는 상표권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수입물품이 국내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제조자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라 하더라도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를 요청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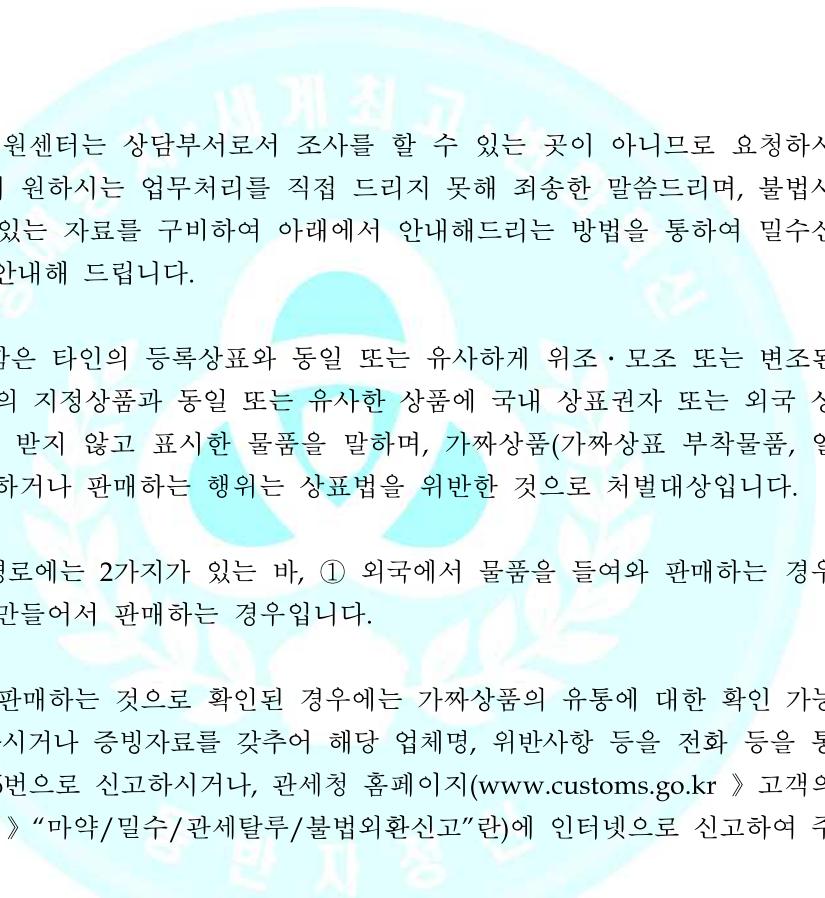
- 관계 : 대리인
- 성명/상호 : *** 법률사무소

7 상표법 위반

질문

-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위조상품이거나, 다른 판매물품도 위조상품인 것 같은데 이를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 
- 우선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상담부서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원하시는 업무처리를 직접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밀수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위조상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하며, 가짜상품(가짜상표 부착물품, 일명 짹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대상입니다.
 - 가짜상품의 유통경로에는 2가지가 있는 바, ①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와 ②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짜상품의 유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파악하시거나 증빙자료를 갖추어 해당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전화 등을 통해 국변 없이 125번으로 신고하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마약/밀수/관세탈루/불법외환신고”란)에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사항과 제보한 분의 신원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해드리며, 제보내용 등이 관세법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5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일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불하며 포상금의 최소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 그러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짜상품을 제조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경찰청홈페이지(사이버수사대 www.police.go.kr)나 검찰청(www.sppo.go.kr)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또한, 특허청에 위조상품 제보센터(1666-646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위조상품 또는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신고를 받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신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원 산 지

1 원산지증명서 제출

질문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는 항상 제출해야 됩니까?

답변

- 다음 각 호의 규정·협정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수입신고시에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TNDC) : 별지 제5호의3서식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 별지 제5호의4서식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 : 별지 제5호의5서식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 별지 제5호의6서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 별지 제5호의7서식
 -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 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 한편, 필수적 제출대상이 아니라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원산지증명서(별지 제17호의 8서식)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 관세(법 제65조, 제67조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청 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 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검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련 법령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등)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2 원산지 판정기준

질문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크게 FTA와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요구되는 특혜원산지 기준과 원산지표시와 같이 공정무역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비특혜원산지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특혜원산지기준은 FTA 협정문과 국내 FTA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에,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비특혜원산지규정 적용 시 원산지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실질적변형기준** :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 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 “실질적인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 한 세번(HS code 6단위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원산지 판정에 있어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 규정 제85조 제8항 참고)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질문

-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구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는 일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FTA와 같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이 있으며 각각 발급기관이 다릅니다.
- 일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114)에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공회의소 무역인증 <http://cert.korcharm.net>)
- 반면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의 관할구역 안 입주업체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세관에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접속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
 - * UNI-PASS 이용신청서 작성>>세관등록필요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6호)

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질문

- 원산지표시는 모든 물품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표시대상물품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입 물품에 한정되며, 현재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총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수입물품 중에서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 및 수출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류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해서는 유치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제1항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벌칙)



5 원산지표시 면제

질문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택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 · 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 부속품 및 공구류

관련법령

대외무역법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원산지표시의 면제)





6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

-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產)”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5.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cm²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cm² 이상 3,000cm²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cm² 이상 : 20포인트 이상
- ③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발견 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 (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 등으로 표기)

-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또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2에서는 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에 있어, 원산지의 국가명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하셔야 합니다.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 : 약어(예 : Great Britain을 “Grea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 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 :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 United States of America → USA,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 → Swiss로, Netherlands →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UK,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로)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관련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및 제8조(원산지국명 표시)

7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

질문

-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가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까?

답변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특수통관과)으로부터 원산지표시의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원산지표시적정사전확인신청서(별지 2호 서식)와 견품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신청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 상단의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검색한 후,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8 원산지 판정 제도

질문

-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까?

답변

-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원산지 판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신청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 상단의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검색하여 별표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사전 판정)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원산지 판정)

9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질문

- 어떠한 경우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며, 위반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허위표시** : 원산지가 아닌 나라에서 생산된 것 인양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판정례 별표4)
 - **오인표시** :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판정례 별표5)
 - **부적정표시** :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선명도·글씨체등으로 소비자에게 원산지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 곤란한 표시 (판정례 별표6)
 - **미표시** :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판정례 별표7)
 - **손상 변경** : 표시된 원산지를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경우(제12조)
-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미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내지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나, 부적정표시의 경우 시정조치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 또한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라도 3개월 이내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제7장 별칙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세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및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10 주류의 원산지 표시

질문

- 저희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위스키 완제품은 영국산 원액(영국에서 호주로 보냄)과 한국산 병(한국에서 호주로 보냄)으로 만들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영국산 위스키 원액을 희석하고 병에 주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위스키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와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병입국 : 호주, 원액원산지 : 영국】로 되어있는데, 이 표시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 위스키 원액은 제2208. 30호이며, 위스키 완제품은 제2208. 30호이어서 HS code 단위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인 영국입니다.
* 참고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은 국내 개별법인 주세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관련 법령 참고 바람)
-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원산지 : 영국(병입 : 호주), 단 호주는 선택사항임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주세법 시행령 별표7 주류의 표시사항별 표시기준

11 OEM 방식의 원산지 표시

질문

- 한국에서 디자인한 가방 등의 악세사리 제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 후 수입하려 할 때,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답변

-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라고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원산지 오인표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산지 오인표시인 ‘Designed by Korea’를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오인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제77조(원산지 오인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5(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12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질문

- 기 수입된 의료기기 및 장비 등의 하자보수용으로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2조에 따르면,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록 판매용이라 할지라도 원산지 표시 면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이라 함은,
 -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 센터(계약에 의한 지정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 되어야 하며, 일반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하자보수용 물품에 대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지침, 공정무역과-1299, 2008.06.03)
- 따라서, 판매용의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에 대해 직영AS센터의 하자보수용 일 때만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일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13 “Handcrafted in 국명”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질문

- 수입물품에 “Handcrafted in 국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국명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Manufactured by 물품제조사 회사명, 주소, 국명”
 - “Manufactured in 국명”
 - “Produced in 국명” 또는 “국명 Made”
- “Handcrafted in 국명” 또는 “Handmade in 국명”的 경우 “손으로 만든”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용어로 사용되지도 않고 실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전한 상거래 관행상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보기 어려워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정받고자 하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서식 없음)

관련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제1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14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질문

- 세트로 판매되는 완구로 밀폐용기로 소매용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 고시 제4조5항 별표2의1에 열거된 수입 세트물품(HS code 제9503호 중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을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트로 판매되는 장난감이 HS code 제9503호 세트제품으로 품목분류 되고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다면 그 물품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세트물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을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Made in China, Taiwan...)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15 단순가공한 국가를 원산지와 같이 표기한 경우

질문

- 칠레산 냉동연어를 태국에서 단순가공(절단, 가열, 냉동)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원산지 : 칠레/가공국 : 태국'으로 표시해도 되는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제8항에 따라 냉동, 냉장, 통풍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동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태국이 아니라 칠레입니다.
- 따라서, 원산지가 아닌 단순 가공국을 원산지 옆에 표시('가공국 : 태국')하는 것은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에 따라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공국을 나란히 병기하는 것은 부적정한 표시행위에 해당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방식(예 : 원산지 - 칠레 또는 칠레산(産), Made in Chile 등)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16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판정

질문

- 유모차 부품들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조립할 때 유모차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없다면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공정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나, 귀사의 물품은 「별표9」에 해당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정하는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는 수입물품이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실질적변형:HS6단위변경)의 공정을 거쳐 국내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나, 세번변경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
-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합니다.
- ※ 국내생산물품이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는 물품일 경우 원산지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17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판정

질문

- 냉장고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태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물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한정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물품 중 일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원산지표시 규제는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 상대국의 제도에 따라서 표시하여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산지가 우리나라 인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판매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유통이력관리

1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질문

-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유통이력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답변

-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선량한 수입자, 국내 생산자도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바, 동 고시에서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보건 보호 및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2 유통이력신고 방법

질문

- 유통이력신고는 어떻게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

-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체 명의의(범용·관세청 통관용·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 위해 원격지원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인정 여부에 있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은 신고인의 사업자번호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자 등록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유통이력신고할 때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바라며, 이는 가까운 은행에서 사업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전자상거래용(4,400원)으로 발급받거나, 관세청통관포탈용(55,000원, 한국정보인증·KTNET) 또는 범용(110,000원,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유통이력대상물품

질문

-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어떤 것이며, 그 목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답변

- 유통이력대상물품은 관계기관과 협의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은 2015.11.30. 현재 31개 품목입니다.

비식용 천일염 · 비식용 대두유 · 냉동복어(금밀복)(‘15.8.1.), 황기(‘15.3.1.), 백삼 · 냉동고추 · 뱀장어(‘13.2.1.), 구기자 · 당귀(‘15.2.23.), 냉동조기(‘13.8.23.), 건고추 · 향어 · 활낙지(‘14.3.1.), 지황 · 천궁(‘15.3.1.), 사탕무당(설탕)(‘14.3.1.), 산수유 · 오미자(‘15.5.1.), 냉동옥돔 · 작약 · 황금(‘13.2.1.), 냉동고등어 · 냉동갈치 · 미꾸라지(‘13.8.23.), 명태(‘13.9.16.), 가리비 · 돈(‘15.8.23.), 냉동꽁치(‘14.3.1.), 김치(‘14.3.1.), 식염(‘14.11.3.), 천일염(‘15.8.1.) *()안은 지정일

-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수입물품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별표1(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법령검색시스템(www.law.go.kr) 접속후 >행정규칙 메뉴에서 고시 명 입력후 검색합니다

※ 유통이력 대상여부 확인방법

수입신고한 물품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으로 미리 지정된 품목분류번호 및 표준품명과 일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이관되며,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유통물품은 양도자(수입자 또는 전단계 유통업자)가 이력신고하면 그 내용을 「유통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 제4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질문

- 개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 유통이력신고의 의무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종소비자(식당, 제조공장 등 수입물품의 소비가 완료되는 자)나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라 함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의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업자”라 함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소매 또는 유통·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는 유통업자로 본다.
 3. “소매업자”란 유통이력대상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최종소비자”란 유통이력대상물의 형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로서 개인 등을 말한다.
 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함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5 유통이력 신고일자

질문

-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 판매일자에 차이가 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

답변

-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때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 택배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평가 · 감면 · 사후관리

1 과세환율

질문

-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시점은 대금결제시점인가요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인가요?

답변

-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말하며,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 참고로 과세환율의 산정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판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시합니다.

※ 참고사항

환율 산정을 위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대외비라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시하지 않는 외국통화의 환율을 확인해 보려면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화별로 수출입시 적용되는 환율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UNI PASS >>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주간환율”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하실 때 수출/과세환율 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2 잠정가격신고 제도

질문

- 상표가 있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지불될 로얄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시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가격신고)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잠정가격신고란 수입신고(가격신고)시 잠정된 가격으로 일단 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기한(2년 이내에서 통관지 세관장이 결정)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수입신고시 미래의 매출액 및 지불될 로얄티액을 알 수 없어 가격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관장이 정해준 기한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방법은 수입신고서를 관세청에 EDI로 전송할 때 작성하는 가격신고서 “10번”란에 있는 잠정가격신고 부분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8조(잠정가격신고), 제49조(잠정가격 신고대상),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제51조(확정가격신고)

3 무상수입물품의 과세 이유

질문

- 구두 샘플 100개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수입인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과세를 한다면 과세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물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4 무상수리비 과세 이유

질문

- 수입한 물건에 불량이 생겨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였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수리했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 무상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 등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과세가 됩니다.
- 이러한 수리비 등의 과세시 수리가 무상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해 재수입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수리비용(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됩니다.
- 가치상승은 당해 물품의 수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지 수리비를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재수입물품의 가치상승분 즉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수리비 지불과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47221-116, 2001.2.1》

-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 여부
 - 무상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가공·수리 등으로 인해 상승한 부가가치분(왕복운임, 보험료, 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하게 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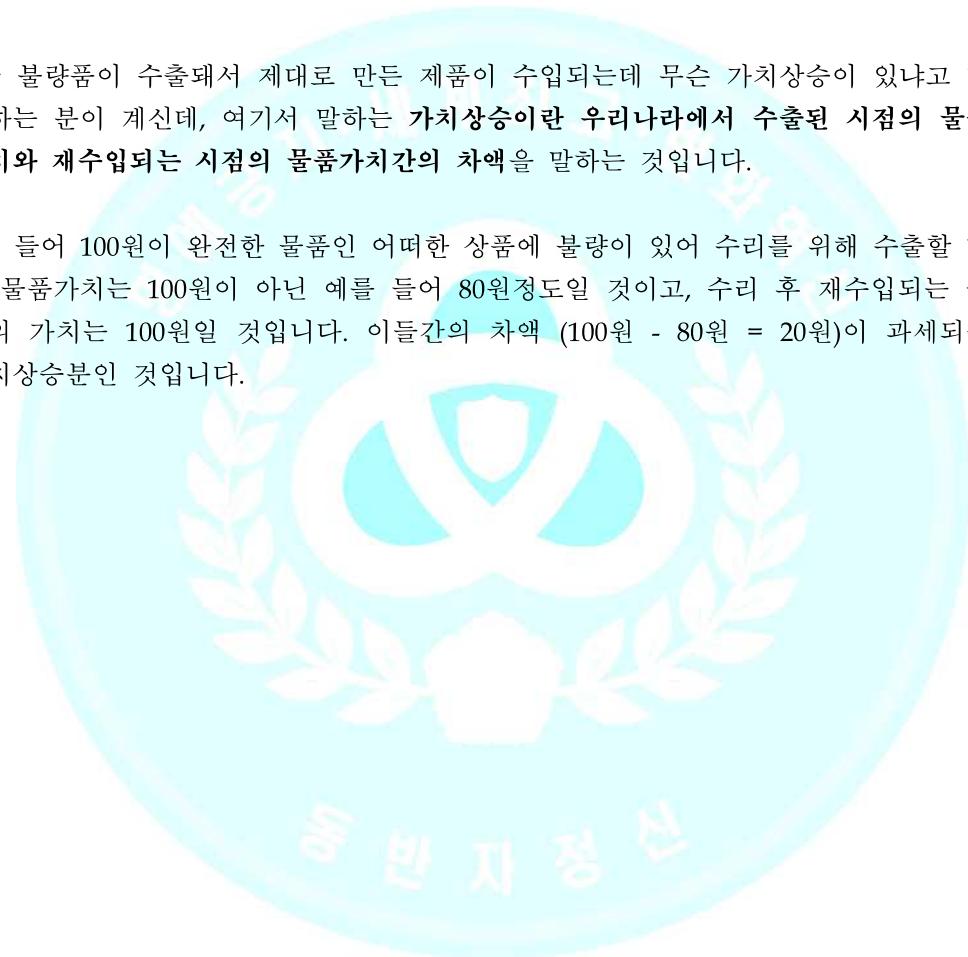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

※ 참고사항

- 무상수입물품의 과세시와 마찬가지로 무상수리비의 과세시도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 지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해 물품의 가치(또는 가치상승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끔 불량품이 수출돼서 제대로 만든 제품이 수입되는데 무슨 가치상승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상승이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시점의 물품 가치와 재수입되는 시점의 물품가치간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100원이 완전한 물품인 어떠한 상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를 위해 수출할 때의 물품가치는 100원이 아닌 예를 들어 80원정도일 것이고,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가치는 100원일 것입니다. 이들간의 차액 ($100원 - 80원 = 20원$)이 과세되는 가치상승분인 것입니다.





5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운임 과세여부

질문

-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운임을 별도로 과세하나요?

답변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 귀하가 구매한 물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 등 영수증에서 이러한 조건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CIF USD 100 등)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별표 제1호」의 “특급택송화물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거나, 동 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특례) 규정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800>)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6 CIF조건 수입시 BAF 과세 이유

질문

- CIF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 세관에서 우리 회사가 지불한 BAF비용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CIF조건으로 수입하는데 BAF를 과세하나요?

답변

- BAF(Bunker Adjustment Factor)는 항해 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의 보전 비용입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 BAF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송관련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참고사항

- 다음 항목도 운송관련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 1)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 항해 중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 비용
- 2) FAF(Fuel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 항해 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 비용



7 무형물 과세 여부

질문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면서 대금으로 10만불을 미국에 지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니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 참고사항

- 수입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외화는 지불되었는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근거실적이 없어서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563, 5775, 5779, 5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입물품의 국내 설치비 과세 여부

질문

- 일본에서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국내 설치비 50만엔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 아니오,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닌 공제요소입니다.
- 따라서 재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하는 비용은 공제요소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이러한 공제요소는 전체 지불금액 중에서 공제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참고사항

- 수입물품이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들은 관세법상 공제요소이므로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국내 설치비, 국내에서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비용, 국내 교육비, 내륙운송비용 등도 같은 의미의 공제요소들입니다.



9 보상차원의 가격할인 인정 여부

질문

- 기존에 수입한 석재에 불량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번 수입되는 석재에 대하여 20% 가격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불량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번 수입품에 대한 가격할인을 받은 경우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이므로 당해 할인된 가격은 인정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할인 이전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10 인터넷 구매 할인 인정 여부

질문

- 해외 판매사이트를 통해 골프채를 정가에서 15% 할인 받은 금액으로 구입하였는데, 동 물품 수입시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답변

- 네,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가격 할인분은 인정됩니다.
- 어떠한 물품을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할인된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할인가격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이므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 47221-428, 1998.12.17》

- 인터넷으로 할인 구매한 물품의 할인 가격 인정 여부
- 인터넷에서 할인된 물품 구입시 적용받은 할인금액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할인액으로서 누구나 동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 WTO 관세평가협약 하에서는 가격할인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할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 :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 :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1 대체품 무상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질문

- 기존 수입물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차 수출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출자로부터 대체 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세금납부 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같은 물건에 대해 세금을 두 번씩이나 내야 하나요?

답변

- 대체품은 별도의 새로운 물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수입(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수 입된 물품의 HSK 10단위 일치)되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입니다.
- 따라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 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존 수입되었던 물품의 가격이 동종 · 동질물품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12 생산지원비 과세

질문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단과 라벨 등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한 후 의류를 만들어 수입합니다. 임가공비로 의류 한 벌당 2불을 지불하였는데 세관에서는 임가공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답변

- 원부자재 가격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물품 가격 또는 그 인하 차액”은 가산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의류 수입시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에 당해 원부자재를 임가공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비용을 생산지원비라고 하는데, 관세법상 생산지원비를 과세하는 이유는 수입된 물품은 의류이므로 의류 자체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불된 임가공비는 의류의 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가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의류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관세법시행 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6조(생산지원비용),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 방법)

※ 참고사항

- 우리나라에서 기계나 기구, 금형 등을 공급한 후, 동 물품들을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 수입시에도 생산지원비로 과세됨은 동일합니다.
-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인가를 받고 현물출자한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수입시 당해 기계설비비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47221-876, 2000.9.29》

○ 해외 현지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 여부

- 구매자가 100%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는 해외투자 인증서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 제공한 것으로 이는 해외 투자에 해당되며, 기업회계 관리상 고정자산의 계정이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생산 지원비의 가산요건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13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질문

- 일본에서 건설장비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는 총 10만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시 10만불로 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10만불이 아닌 원 물품가격인 100만불로 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불할 임차료가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물품의 원래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즉, 지불할 임차료가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물품의 원래 가격이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 유사물품의 가격,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3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5호(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14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질문

- 수입한 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했다가 개발 완료된 채 수입할 경우 과세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만약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방법(실제지급금액+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15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질문

- 중국에 있는 A사는 당사의 100% 투자회사인데
국 A사로부터 셔츠 2만벌을 개당 50불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가격은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당사의 수입예정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로 인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비록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가격결정이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되었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된 경우라면 당해 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귀사가 아닌 타사도 A사로부터 셔츠를 수입할 때 개당 50불로 수입할 수 있거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수입가격인 개당 50불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과세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로 인해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가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16 해외임가공 수입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 여부

질문

-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100단위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안한 추가 3단위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전자제품의 수입시 세관에서는 중국에서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 3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원재료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따라서 완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3단위)은 비록 당해 완제품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 원재료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련 관세청 예규, 종합심사 47400-146, 2003.3.20》

- 해외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의 손모분 가격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17 관세감면 신청시기

질문

- 재수입면세 적용을 사후에 받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과 관련된 신청서 및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한가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되어 부과고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함)
-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이 되지 않았고, 단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적용을 받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8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질문

-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외교관용물품인데요,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외교사절담당관실 02-2100-8260)에서 외교관용 물품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 여기서 면세를 받은 물품 중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 포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예정인 때에는 관할지 세관(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서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4조(외교관용물품 등에 대한 면세신청)

19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질문

- 관세법 89조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적용받기 위한 조건, 절차, 감면적용기간 등에 대하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관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제조·수리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 작업설비와 능력
 -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 이러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 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조·수리공장을 지정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법 제89조의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항공기(부분품 포함)
 -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관련 법령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20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입)

질문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귀하의 경우,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학술연구용 물품 감면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 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 조합에 한정)
 3.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할 것
 - 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물품일 것
 - ② 시약 및 견품
 - ③ 연구·개발 대상물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④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이러한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세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21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학교에서 수입)

질문

- 학교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있는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학술연구용물품 감면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학술연구용 · 교육용 · 훈련용 ·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것 또는 학교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 교육용 · 훈련용 ·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 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2.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할 것

- 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②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이거나 이러한 기기의 부분 품 및 부속품으로서 국내제작곤란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③ 부분품(②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 되는 것에 한한다.) · 원재료 및 견품

- 이러한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세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가 연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의할 점

- 대법원판례 71누130(11.9.28)에 근거, 사립대학교의 총장은 학교의 관리인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의 책임 및 권한을 지닌 사람은 이사장이므로 이사장 명의의 용도설명서가 첨부되어 확인이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학교의 범위

-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거 유치원도 포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22 종교용품 면세

질문

- 교회에서 음향장비(구입금액 : \$500)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 관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교회 ·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은 종교용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법 별표 관세율표(HS code)가 제8518호, 제8531호 및 파이프오르관 외의 제8519호 · 제8521호 · 제8522호 · 제8523호 및 제92류에 속하는 물품은 이러한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도 아니며, 위의 면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속하므로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 · 자선 · 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23 장애인용 차량 면세

질문

- 미국서 장애인용으로 완전히 개조된 중고 혹은 신차 뱠을 사오려고 하는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1. 지체장애인용 차량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라목의 (10)에 해당되는 장애인용품인 “장애인용 특수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신체장애인용 차량)과 장애인을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모두 면세됩니다.
- 아울러 일반자동차를 개조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자동차

- 일반차량을 장애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만 면세됩니다. 따라서 해당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조건부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니다.

-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서식42)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
- 말한다)
 - 주민등록표등본(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에 교육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면세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24 정부용품 면세

질문

- 저희는 통신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군부대와 협의하에 외국 물품을 저희회사가 수입하여 내자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관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군부대에서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 제출하면, 면세가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와 군부대와는 직접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 관세법 제92조제2호에 의하면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정부용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군수품확인서, 위탁수입물품확인서-국방부에서 발행)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위탁의 의미는 단순 수입대행만을 의미하고 납품은 해당되지 않으며,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관세법시행규칙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25 특정물품의 면세

질문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 등에서 보안검색 목적으로 사용할 장비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요?

답변

- 관세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국제경기연맹 · 국제장애인경기연맹 · 각 국올림픽위원회 ·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 · 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 · 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관련 법령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26 소액물품(견품) 면세

질문

- 관세법 제94조 관련 수입물품 중 견품을 수입할 경우 유 · 무상 구분에 따라 감면대상



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특성상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액면세가 가능합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상용견품및광고용물품에대한업무처리지침시달(청특수통관 47200-262, 2000.8.11)에 의하면 상용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견품은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되어 있거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또한 위의 천공 절단, 견본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사용목적(반입사유), 물품 가격,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품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유·무상 구분에 따라 소액면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관지 세관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견품의 범위에 속한다면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면세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용견품의 범위

- 시식, 시음, 투약, 대리점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화장품, 음식 등은 수입승인면제대상이 아니며 상용에 공할 우려가 없는 수량내에서만 견품으로 인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27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재수출)

질문

- 중국에서 고장난 기계를 들여와서 수리해서 다시 중국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20피트 컨테이너에 100대 정도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할 경우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통칙 97-115...2[재수출기간의 의의]

: 재수출기간은 재수출신고수리일이 아닌 재수출신고일을 의미

- 귀하의 물품이 위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하신 후 정해진 재수출이행일 내에 수출하신 후 담보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일 내에만 수출하신다면 몇 번을 나누어서 수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다만, 수출시에는 일반 P/L 수출이 아닌 서류제출로 신고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28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제3국 재수출)

질문

- 중고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수리후 제3국 수출하는 경우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은 우리에서 수출된 물품이 운송 도중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 물품의 특성상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물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리·가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수리를 위한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거주자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통관기획47240-85, '01.1.19)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의 규정의 의미」

29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전시 후 재수출)

질문

- 코엑스에서 제품 전시 후 재수출할 예정인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6호에 의거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 ·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전시회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시회 팜플렛, 부스배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귀하는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출을 하여야 하며, 수출 후 담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30 재수출감면세

질문

- 외국에서 물품을 임대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돌려보낼 예정인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8조에 의거 재수출감면세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수출감면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국내제작관란추천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
내지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 이에 해당된다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경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연장시 차액분을
징수(가산세 부과 안함). 아울러 조기수출시에 환급불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물품)

31 재수입면세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질문

-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해도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 가공 ·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대상입니다.
- 다만, 관세법 제99조제1항의 다음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1.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자가 환급받을 권리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따라서 관세법 제9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하더라도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32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질문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인가요?

답변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수출계약상 포장용기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포장용기의 대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제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포장용기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포장용기의 소유권을 수입하는 자에게 이전한 다음, 유상으로 그 포장용기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사업자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한 원자재 중 품질이 불량한 것, 생산중단 된 제품의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한 다음 현지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고 있지만,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바, 동 법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33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임가공물품)

질문

- 중국에서 임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임가공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수입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후 수입한 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수리비) +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임가공비(수리비) +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이러한 감세는 가공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여야 하고, 가공인이 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반드시 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34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질문

- 외투법인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면세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여기에서 자본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

1.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2.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3. 기타 당해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해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사본)
 - 선적일 이전에 검토·확인 신청
2.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서(외국환은행)
3. 당해 자본재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하는 현금에 의하여 도입됨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사본 등)
 -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제29조(도입자본제의 검토·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제의 검토·확인)

35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질문

- 저희 법인은 관세법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장비 수입시 관세 감면(80%)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비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체 및 대학교에서 의뢰하는 실험 및 연구 등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으나, 장비사용료 징수시 추후 관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법 제90조 및 관세법 시행 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물품(학술연구용, 교육용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받은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의뢰된 실험 등에 전용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감면대상 기관이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하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외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276조제3항 (허위신고죄), 제277조 제4항 제3호(과태료)



36 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질문

-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물품을 타사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다 는 데 세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 감면(면세)이나 용도제율을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일정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나 양도 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에 따라 3개월에서 2년간 사후관리를 하며,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판매 이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도외 사용 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첨부서류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서)을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에서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당해 물품을 판매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및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 참고사항

- 사후관리물품을 판매, 양도, 임대, 수출, 일시반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시에 규정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7 용도외사용승인시 감면 승계 가능 여부

질문

-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물품을 타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때 동 물품이 공장자동화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공장자동화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승인시 또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용도외 사용 승인 대상물품이 새로운 감면인 공장자동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공장자동화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새로운 감면규정(공장자동화감면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30%(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50%)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당초의 감면규정(학술연구용감면 80%)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납부해야 하며, 용도외 사용 승인 후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용도외사용승인 이전에 새로운 감면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관세법시행령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 신청 등)

《관련 관세청 예규, 통관기획과-1435, 2005.4.4》

- 용도외 사용 승인 후 감면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신
 - 용도외 사용 승인 후에는 감면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용도외사용승인 신청시 감면을 신청해야 함



38

기업부설연구물품 설치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 폐사는 동일 법인으로 1, 2, 3공장의 사업장이 있는 업체입니다. 금번 당사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학술연구용품 감면세)의 물품을 도입하여 제3공장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사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는 제1공장 주소로 인가되어 있으며 제1, 3공장은 동일 업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공장에서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시행 규칙 별표1의 물품
 - 시약 및 견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제1)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또한, 관세법 제102조에 따라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입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용도(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39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승인시 가산세 부과 여부

질문

- 수리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 후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경우 관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산세는 징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 제4항(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령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 징수)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40 환급받은 관세 추징 후 재수입면세 신청가능 여부

질문

- 당사가 수출한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여 수리 후 재수출 조건으로 무환 통관한 건이 있습니다. 수리 진행 중 해외 구매자로부터 그 수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수출이 부득이 불가하게 된 사항이라 관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재수입 면세로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물품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었다면 용도외 사용승인 신청시 관세의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03조 제1항(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재수입면세물품신속처리방안시달(통관 47240-190, 1999.2.9)

41 재수출 불이행 추징이후에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질문

- 재수출 조건부 통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출하지 아니하여 추징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추징된 관세 납부 후 추후에 그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기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내에 정해진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동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재수출면세 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재수출면세 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귀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추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추징 후 수출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 제2항 및 제3항(재수출면세)



42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시 납세의무자

질문

- 관세법 제97조에 의거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국내 판매를 위해 해당 세관으로부터 사전 양수도 승인을 받고 용도외 사용승인시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인가요?

답변

-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입니다.
- 관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면제(제97조 제1항)를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내에 정해진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가능), 동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따라서, 용도외 사용 승인시 발생하는 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됩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97조 제3항(재수출면세)

43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장소 등

질문

- 대학의 경우 사후관리물품의 구매는 본부 경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사용은 각 단과대학의 연구실 혹은 부설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후 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어느 곳에 비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또한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수기로 작성하는 대장을 대신하여 ‘아래한글’이나 ‘엑셀’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 · 관리 의무)에 따라 사후관리물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 일자, 일시반출입, 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 귀하의 경우 단과대학에서는 설치된 물품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설치 위치 등 자료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세관의 사후관리물품 현지확인시 사후관리 의무 이행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범주에는 한글이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도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 · 관리 의무)

44 사후관리 대상 의무사항 안내

질문

-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이행사항 안내가 관리확인 전에 세관에서 통보가 되는지와 사후관리 물품 명세서에서 사후관리 번호를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에 따라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가 인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메일(E-mail),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정보제공 ⇒ 자사실적 ⇒ 사후관리물품내역에 접속하시면 귀사의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및 사후관리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45 사후관리 제외대상인 품목당 1,000만원의 의미

질문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사후관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문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는 취지는 관세차익이 적어 사후관리의 실익이 미미하기 때문인 바, 본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별 수입신고서 상 품목당 단가 및 수량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품목당 과세가격’의 의미는 ‘개별 품목당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의거 ‘동일 품목번호로 한 란에 신고되는 품목의 과세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품 목 분 류



1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의 정의

질문

-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란 무엇인가요?

답변

- 품목번호(HSK)는 HS 협약상의 HS 품목분류표(6단위 코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또는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 단위 코드로 세분화한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을 WCO가 정한 품목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HS 코드번호를 결정·분류하는 것입니다.
 - HS 협약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품목 분류를 통일함으로서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목적 등으로 제정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고 이를 약칭하여 “HS 협약”이라 합니다.(1988년부터 시행중이며, 통상 5~6년 주기로 개정)
본 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HS 품목분류표)로 구성되어 있고 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각 1통씩 작성되어 벨기에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 HS(Harmonized System) : 정식명칭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로서 HS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 수출입품목의 통관을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Customs Tariff Nomenclature)와 통계품목분류



표(Statistical Nomenclature)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 HSK(2015년)의 4단위는 1,224개, 6단위 5,205개, 10단위 12,243개입니다.

2 품목번호(HSK)의 확인방법과 절차

질문

- 수출입을 하기 위해 품목번호(HSK)를 알고 싶은데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품목번호(HSK)를 알고자 하는 경우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

②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실적인 없는 물품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인터넷을 통한 확인방법

- 방법 1 :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관련 규정집 열람
(☞ 관세율표,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등)

- 방법 2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Quick Menu의 '품목분류' >> 품목분류검색 >> "관세율표" (또는 "분류사례") 항목을 체크후 품명 또는 상품명(영명 또는 한글명) 등을 입력 후 검색

- 방법 3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Quick Menu의 '세계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 품명 입력 후 검색

㉡ 상담을 통한 확인 방법

-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방법,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세관에서 상담을 받는 방법



※ 이 방법은 특별한 형식없이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담내용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①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관세법 제86조)

②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 수입 및 수출신고전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

http://portal.customs.go.kr/kcsp/menu.jsp?pageLabel=busine_8

- 견본 등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③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④ 재심사제도의 의의 :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④ 재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방법 : 재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
- ⑤ 사전심사 및 재심사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 제외)
- FTA 원산지 검증확인,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사전심사 처리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예상 불이익 등의 사유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경우 15일로 한다.

⑥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게 품목분류를 적용
- 통지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사전심사서) 또는 재심사 결과(재심사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3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와 변경절차 및 결정사항 효력

질문

- 품목분류가 이미 결정된 물품에 대해 새롭게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
 -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 변경절차 및 기존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효력
 -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은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기능과 운용 방법

질문

- 품목분류의 최고 결정기구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기능과 운용 방법은?

답변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기능
 -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용 방법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합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하되,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2호 · 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관세법시행령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1조(관세품목분

류위원회의 회의)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



5 수입신고한 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가능 여부

질문

-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전심사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출입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입신고 즉, 통관한 실적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도 향후 수출입자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263(2011. 5. 31.) >

제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과 관련으로 수출입자가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입신고한 물품의 경우에도 향후 수출입자가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① ~생략~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6 제비추리 · 삼겹살의 품목분류

질문

- 식용으로 하는 제비추리와 삼겹살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내용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0202호에 냉동한 쇠고기를 분류하고, 제0203호에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비추리는 소의 갈비 안쪽 흉추의 몸통을 따라 붙어 있는 떼 모양의 긴 목근을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으로 뼈 없는 쇠고기가 분류되는 제0202.30-0000호에 분류됩니다.
- ◉ 삼겹살은 ‘살과 지방부분이 3번 겹쳐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갈비를 떼어낸 부분에서 복부까지의 넓고 납작한 모양의 부위로 붉은 살코기와 지방이 삼겹의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선·냉장한 삼겹살은 제0203.19-1000호, 냉동한 삼겹살은 제0203.29-1000호에 분류됩니다.

※ 제비추리

제1등 뼈에서 제6등 뼈와 갈비뼈 접합 부위를 따라 분포하는 떼 모양의 긴 목근으로 목심 및 등심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으로 그 모양이 제비의 날개를 편 것 같아 날씬하고 긴 고기 같다고 하여 ‘제비추리’라 불리는 것입니다.



7 돼지족의 품목분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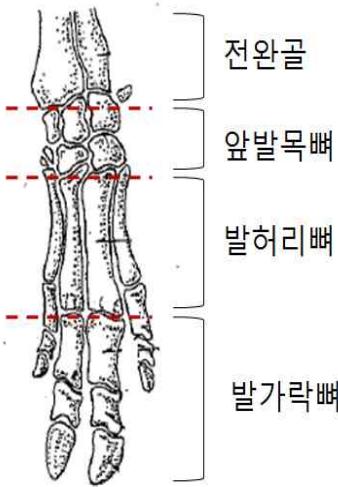
- 돼지의 발가락뼈와 발허리뼈 및 발목뼈 부분이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돼지족발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가 분류되고 제0206호에는 “식용설육”이 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됩니다.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에서 “앞다리” (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법은 돼지 족의 판단근거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12.11.23)한 바 있습니다.



- 전완골: 요골(橈骨)과 측골(尺骨)의 2뼈로 되어 있다. 손바닥을 전방으로 향한 팔의 위치에서 보면 요골은 외측에 있다. 자유 하지골의 하퇴골에 해당한다.
- 발목뼈: 완골(腕骨), 6~8개의 뼈가 모여 복잡한 형태의 관절을 이루는 짧은 뼈의 무리
- 발허리뼈: 손바닥을 이루는 부분
- 발가락뼈: 손가락을 이루는 부분

- 또한,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 사전 등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 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돼지의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6.49-1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8 쇠고기·수산물·채소 등의 염장 기준

질문

- 염장 쇠고기, 염장 끓, 염장 깻잎의 품목분류는?

답변

- 염장을 하는 목적은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일반적 물간법을 기준으로 염수의 농도가 10%이상이면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고 15% 이상이면 효모의 생육이 억제되고 20%이상이면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므로 식품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염도가 최소 20%이상인 염수에 염장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헌 및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에 의하면 물간법에 의한 염장의 경우 미생물의 생육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서 18~23%의 염수를 사용하여 염수의 농도가 17% 일 때 육내의 염도가 8.9%라고 합니다.

- 따라서, 품목분류상 염장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 쇠고기 : 염장의 목적과 유통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함유량이 9% 이상이어야 염장 또는 염수장 쇠고기로 보아 제0210.20-9000호에 분류됩니다.
- ◉ 수산물 : 염장수산물은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 함량이 10% 이상의 것(단, 성게젓, 명란젓은 8%이상)은 제0305호(어류), 제0306호(갑각류), 제0307호(연체동물)에 각각 분류
- ◉ 채소 : 육질내부의 소금 함량이 12%이상인 것은 제0711호에 분류

관련법령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제3호, 제9호

9 신선한 장어의 품목분류

질문

- 신선한 장어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0302호에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뱀장어는 소호 제0302.74호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 뱀장어는 민물에서 사는 반면 다른 장어(붕장어, 갯장어, 먹장어) 종류는 모두 바다에 살고 있으며, 신선한 장어에 대한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뱀장어(昂궐라종)** : 뱀장어가 분류되는 제0302.74-0000호에 분류
- ◉ **붕장어** : 붕장어가 분류되어 있는 제0302.89-3000호에 분류
- ◉ **갯장어** : 갯장어가 분류되어 있는 제0302.89-4000호에 분류
- ◉ **먹장어** : 기타 어류가 분류되는 제0302.89-9090호에 분류

※ 참고자료

장어명	과목	주서식지	이명
뱀장어	뱀장어목 뱀장어과	민물	민물장어
붕장어	뱀장어목 붕장어과	바다	아나고
갯장어	뱀장어목 갯장어과	바다	하모, 참장어
먹장어	먹장어목 먹장어과	바다	곰장어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뱀장어



붕장어(아나고)



갯장어



먹장어(곰장어)



10 껍질째 삶은 새우·오징어(냉동), 한치와 꼴뚜기

질문

- 껍질째 삶은 새우·오징어(냉동), 냉동한 한치와 꼴뚜기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상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열처리한 어류 등은 관세율표 제03류에서 제외되나, 제0306호의 내용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갑각류는 제03류에 분류됩니다.
- 껍질째 삶아 냉동한 것으로 냉수성 새우류[환달러스종·크란곤·크란곤]는 제0306.16-9090호 및 그 밖의 새우류는 제0306.17-9090호에 분류
- 한치는 일명 화살오징어라고도 하며, 꼴뚜기(학명 : *Loligo beka*)도 화살오징어과 속하는 물품이므로 냉동한 경우 두 물품 모두 냉동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제0307호에 분류됩니다.



☞ 냉동한 한치와 꿀뚜기 : 제0307.49-1020호에 분류

- 연체동물을 삶아 냉동한 것은 제조공정상 관세율표 제0307호에서 제외되며, 제1605호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에 분류됩니다.

☞ 삶아서 냉동한 오징어 : 제1605.54-2099호에 분류

11 냉동한 명태 피레트(Fillet)의 품목분류

질문

- 어류 피레트(Fillet)란 무엇이며, 냉동한 명태 피레트의 품목분류는?

답변

- 어류의 피레트(Fillet)는 제0304호(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함)에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0304호의 내용에 '피레트(Fillet)'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조각으로 머리, 내장, 지느러미 및 뼈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 우측 살로 구성되며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동한 명태피레트



- 수산식품가공학 및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수산물검사 예규상 피레트 : "어체의 등뼈를 따라 좌우로 두장의 육편을 발라내고 한장의 뼈판이 남도록 칼질하는 즉 세편뜨기"를 말하거나 "척추골 부분을 제거한 2개의 육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피레트 형상으로 가공하여 냉동한 명태는 제0304.75-0000호에 분류됩니다.

※ 조리한 피레트 및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은 제1604호에 분류



12 게 껍질의 품목분류

질문

- 세척해서 깨끗한 상태의 게 껍질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0508호의 용어에 “갑각류의 껍데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패각(Shells)이 분류되는 제0508.00-2090호에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 제0508호의 용어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 · 갑각류 ·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8호의 내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3)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정리한 패각(貝殼)으로서 특정의 형상으로 깎지 아니한 것. 즉, 세척하거나 단순히 절단하는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패각(貝殼)

13 식용 어류 설육의 품목분류

질문

- 상어 지느러미와 명태의 내장인 창난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용 어류 설육에 대한 분류체계 개정(2012년 제5차 HS 개정)을 요청하여 식용 어류 설육에 대한 소호를 신설하였으며,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꼬리, 위 및 기타 식용 어류 설육은 제0305.7호에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0305호 내용에 '어류의 간장과 어란,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 어피, 꼬리, 부레, 머리 및 머리의 반쪽, 위, 지느러미)으로서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상어 지느러미** : 소호 제0305.71호에 분류되며, 훈제(제0305.71-1000호) · 건조(제0305.71-2000호)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제0305.71-3000호)으로 분류됩니다.

상어 지느러미



- ☞ **창난** :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명태의 창자는 제0305.79-0000호에 분류됩니다.

명태의 내장(창난)





14 소의 곱창과 양·천엽의 품목분류

질문

- 소의 곰창과 양이나 천엽 등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0504호의 내용에 “동물의 모든 장, 방광 및 위가 분류되며 원형의 것이나 단편의 것 또는 식용이거나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소의 곰창은 소의 장이 해당되는 제0504.00-1010호에 분류되며,
- ◉ 소의 양이나 천엽은 동물의 위가 해당되는 제0504.00-3000호에 분류됩니다.

※ 다만, 삶거나 열처리하여 냉동한 소의 곰창은 제1602.50호에 분류

< 참고자료 >

‘곰창’이라 함은 돼지나 소의 창자를 의미하고, ‘양이나 천엽’은 소의 위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소의 위는 양(혹은 곰양), 절창, 처엽(혹은 천엽), 막창으로 4개의 위가 있다.

- 제1위 : 양, 혹은 곰양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덩어리 자체도 크고 시커먼 용털로 덮혀 있다.
- 제2위 : 벌집위라 부르며, 모양이 벌집과 같은 형상이다.
- 제3위 : 천엽이라 불리는데 원래는 처엽이 맞는 말이다. 천엽은 깨끗이 씻어낸 후 얇게 썰어 날것으로 많이 먹는다.
- 제4위 : 막창은 소의 마지막 위 부분이며, 붉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홍창, 주름위라고 한다.





15 더덕 및 도라지의 품목분류

질문

- 더덕과 도라지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0706호에 “식용의 뿌리(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더덕과 도라지가 특게되어 있습니다.
- ◉ 신선한 더덕(Codonopsis) : 제0706.90-3000호에 분류
- ◉ 신선한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 제0706.90-4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HSK 10단위에 더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 건조한 더덕 : 제0712.90-2095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 의료용, 살충용, 살균용 기타 이 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이 분류되며, 건조한 도 라지는 더덕과 달리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조한 도라지의 경우 약사법상 「한약」이라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되어있어 한약재로 분류됩니다.

◆ 건조한 도라지 : 제1211.90-9091호에 분류

건조 도라지





16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질문

- 가공방법(신선, 염장, 초산절임)에 따른 마늘의 품목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0711호에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식염 · 향신료 · 겨자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초산절임 마늘 : 제2001.90-9060호에 분류

※ 신선 마늘 : 탈피한 신선 마늘은 제0703.20-1000호에 분류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제9호(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

제23호(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1호에 분류한다.

- 1)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일 것
- 2)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 것

관련 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9호 및 제23호



17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문

- 코코넛 및 코코넛 밀크, 코코넛 주스 등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답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의 소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내과피) : 소호 제0801.12호에 분류

※ 바깥쪽 섬유질의 껍질(중과피)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 포함

□ 코코넛 관련 물품

- 코프라(제1203호) : 미황색 과육 및 갈색 내피가 혼합된 입상 분말으로 겉껍질과 주스 성분을 제거한 후 분쇄, 건조한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
- 코코아과육 조제품(제2008호) : 코코넛과육을 slice 하여 튀긴 후 조제한 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 코코넛 밀크(제2106호) : 코코넛 과육을 분쇄 후 압착, 여과한 백색 크림상으로 요리 등에 식품첨가물로 사용(W.C.O 결정사항)
- 코코넛 주스(제2202호) : 코코넛워터라고도 하며, 코코넛내부에 있는 무지방, 저칼로리의 음료수
- 코이어 직물(제5311호) : Coir사를 망상형으로 직조한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로 조경용 등에 사용



18 스위티(sweetie) 과실에 대한 품목분류

질문

-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스위티(sweetie)'에 대한 HS Code 는?

답변

- 관세율표 제0805호에는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0805.40호에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를 포함한다)"가 특게되어 있습니다.
- '신선한 스위티'는 포멜로와 그레이프프루트간 교배하여 만든 잡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스위티'로 미국은 '오로블랑코'라고 거래하는 과실입니다.
- 제0805.40호의 용어는 종과 속으로 분류되는 학명이 아닌 일반명으로서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가 분류되고 있으며,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가 상이한 종임에도 같은 호에 분류되고 있는 점은 상거래상 또는 일부 문현상 혼용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스위티'의 경우 생산자 홈페이지, 상거래 및 그 밖의 자료에서 '그레이프프루트' 또는 '포멜로'의 일종으로 생산, 거래 또는 설명되고 있고 동일한 소호에 분류되는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의 속성 중 장점을 얻기 위해 교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상 '그레이프프루트'에 해당됩니다.

❷ 신선한 스위티* : 제0805.40-0000호에 분류

* 그레이프프루트(white grapefruit)와 포멜로(pomelo)간 교배하여 만든 귤 속(Genus)

관련법령

201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19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

질문

-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됩니다.
 - 주로 미숙한 잎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킨 녹차(Green tea)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10호 또는 제0902.20호에 분류되며,
 - 녹차로 제조되기 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된 홍차(Black tea)나 반발효차(예 : 우롱차 등), 후발효차(예 : 보이차 등)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30호 또는 제0902.4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적으로 증기로 찌거나 essential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 샐러드,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도 제0902호에 분류한다.

녹차



홍차



보이차



쟈스민차(가향차)



20 올스파이스(allspice) powder의 관세율

질문

- 건조한 Allspice powder 100% 수입할 경우 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0904.2호 소호 용어에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피멘타(pimentas)속의 과실은 쟈마이카 후추(clove pepper · English pepper 및 allspice로 알려짐)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올스파이스(Allspice)는 피멘타속의 열매로 건조하여 분쇄한 것은 제0904.22-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천받은 경우에는 50%이며, 미추천시에는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적용됩니다.
- ※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하는 물품이 별표 1의 HS 번호에 해당되면 추천대상 품목이라고 합니다.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양식, 양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품목구분	HS 번호	품 명
고 추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
	0709.60-9000	기타 고추류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0904.21-0000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0904.22-0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관련법령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21 고추(신선·냉장, 냉동, 건조)의 품목분류

질문

- 고추를 수입(신선·냉장, 냉동, 건조) 할 경우 품목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고추(파망, 파프리카 포함)는 신선·냉장, 냉동의 경우는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상 제07류에 분류되지만,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경우는 향신료로 보아 제09류에 분류되며 제조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 신선·냉장한 고추는 제0709.60-9000호에 분류
 - ◉ 냉동한 고추는 제0710.80-7000호에 분류
 - ◉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는 제0904.22-0000호에 분류



< 냉동고추와 건조고추의 분류기준 >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710호에 분류한다.
- 1) 고추 과육(果肉)의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을 것
 - 2) 고추의 색깔 및 과형(果形),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
 - 3) 고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작은 매운 고추(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 나.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하되, 가목2) 및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물품이 혼합된 경우로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8호

22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질문

-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 껌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나, 쌀은 예외적으로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됩니다.
- ◉ 벼 : 제1006.10-0000호
-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제1006.30호
- ◉ 쇄미 : 제1006.40-0000호
- ◉ 쌀가루(제11류 주2의 “분”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
- ◉ 날알상의 흑미 : 제1006.20호(정미가 아닌 현미로 분류)
- ◉ 가래떡 : 제1901.90-9091호
- ◉ 날알상의 삶거나 찐쌀 : 제1904.90-1010호

<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밀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의 분류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관련법령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0호

23 쌀가루와 전분 조제품의 품목분류

질문

- 타피오카전분과 쌀가루 88%, 말토덱스트린 12%로 조제된 식품제조용 분말의 품목분류와 수입허가 문의?(전분과 쌀가루의 비율은 3 : 7 또는 6 : 4 임)

답변

- 타피오카전분과 쌀가루 비율이 6 : 4 인 경우
 - ◉ 전분과 쌀가루 이외 성분이 말토덱스트린만을 혼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피오카 전분이 분류되는 제1108.14-1000호에 분류
- 타피오카전분과 쌀가루 비율이 3 : 7 인 경우
 - ◉ 쌀가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901.90-9091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나, 양곡관리법상 쌀가루 혼합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가능(다만,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제19호(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은 제외한다) 조제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1호에 분류한다.

- 1) 주성분과 첨가물의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어 있을 것
- 2) 주성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할 것. 이 경우 다음 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경우에는 주성분으로 본다.
 - 가) 품목번호 제1108호에 해당하는 다른 전분
 - 나) 품목번호 제3505.10호의 변성전분
 - 다) 그 밖의 곡물가루, 구경이나 괴경의 가루·채두류가루 등 전분을 많이 함유한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 3) 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의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혼합되어 있을 것. 다만, 품목번호 제1701호 또는 제1702호에 해당하는 당류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첨가물로 보지 않는다.

비고

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식이요법상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인 물질[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유지·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등]로 한정한다. 이 경우 무기인 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전분 조제품에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않는다.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9호

24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질문

- 대두(Soybean), 대두분말, 두유, 두부 등 물품의 품목분류는?

답변

- 대두(Soybean)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팥·강낭콩 등)와는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 대두(파쇄 여부 불문) : 제1201호에 분류(용도에 따라 10단위 결정)
- ◉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 제1208.10-0000호
- ◉ 대두 조제품(예 : 두유,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 제2008.19-9000호
- ◉ 대두단백질 농축물 : 제2106.10호(예: 두부 제2106.10-1000호)
- ◉ 유리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 제3504.00-2030호



< 쪐(삶은) 대두, 볶은(튀긴) 대두의 분류기준 >

제28호(찌거나 삶은 대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 1) 관능검사(官能検査)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29호(볶거나 튀긴 대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관련 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8호 및 제29호

25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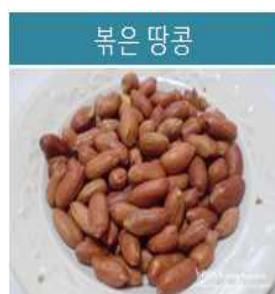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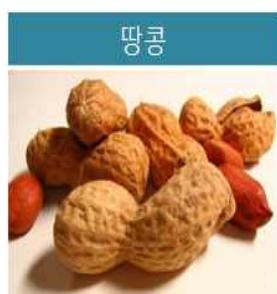
- 복은 땅콩의 기준이 궁금하며, 커피땅콩이나 땅콩버터의 품목분류는?

답변

- 땅콩은 제조공정이나 성상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땅콩(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제1202.4호에 분류
- 커피땅콩(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 : 제1704.90-9000호
- 땅콩버터(Peanut butter) : 땅콩을 볶은 후 균질하게 분쇄한 페이스트상으로 특게되어 있는 제2008.11-1000호에 분류
- 볶은 땅콩 : 적색 내피가 있는 볶은 땅콩(적색도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가 24.00 이상인 것)은 제2008.11-9000호에 분류

< 볶은 땅콩의 분류기준 >

제27호(볶은 땅콩)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적색도(a값)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7호

26 참깨분의 제1208호와 제2008호 분류기준

질문

- 참깨분이 1.25mm 금속망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1208.90-0000호와 제2008.19-9000호로 분류되는 차이점은?

답변

- 참깨분이 1.25mm 금속망체 95% 이상 통과할 경우 가공처리* 여부에 따라 제1208호와 제2008호(가공한 것)에 분류됩니다.

* 가공처리 : 참깨분은 일반적으로 roasting 처리함

◉ Roasting 하지 않은 참깨분 : 제1208.90-0000호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 : 제2008.19-9000호

※ 1.25mm 금속망체에 95% 이상 통과하지 않은 참깨분은 제1207.40-0000호에 분류

< 부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 >

- 가.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7.40호에 분류한다.
- 나.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8.90호에 분류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5호



27

버진 올리브유 및 카놀라유의 품목분류

질문

- 버진 올리브유 및 카놀라유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1509호에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 버진 올리브유, 이는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단 기계적 또는 물리적 수단 (例 : 압착)에 의해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얻어진다. 이들은 세척, 기울여 따르기(decantation), 원심분리 또는 여과 등 이외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버진 올리브유 : 제1509.10-0000호

- 카놀라유는 반건성유인 유채유이므로 제1514호에 분류되며, 에루크산함유량(2% 기준)에 따라 소호 6단위가 달라집니다.

◉ 저에루크산 카놀라유(정제한 것) : 제1514.19-1000호

◉ 기타 정제한 카놀라유(에루크산 함유량 2% 이상) : 제1514.99-1010호

< 관세율표 15류 소호주 제1호 내용 >

1.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란 에루크산(eruc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

28 참기름 · 들기름의 품목분류

질문

- 참기름과 들기름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 전자는 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깔이 짙고 특유의 향미를 가진다.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며, 기름은 빛깔이 짙고 향미도 덜합니다.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 분류되며, 제1504호 및 제1506호 내지 제1515호에 해당하는 유지의 분획화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1) 압착, 침전,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 2) 용제분획화
 - 3)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 따라서, 참깨 및 들깨로부터 제조한 참기름 및 들기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 참기름 : 제1515.50-0000호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 들기름 : 제1515.90-1000호

29 폐식용유의 품목분류

질문

- 폐식용유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상 “폐식용유”가 분류되는 별도 호는 없으며, 물품의 성상이나 용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 또는 이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됩니다.
- 따라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폐식용유)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사료용 : 제1518.00-9010호

◉ 기타 : 제1518.00-9090호



30 사골국물, 멸치액젓 및 사골곰탕의 품목분류

질문

- 소뼈를 물로 끓여 추출한 사골국물, 멸치액젓, 사골곰탕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골국물’은 보통 소의 뼈를 고온, 고압하에서 물로 끓인 후 지방을 분리하고 농축한 것으로 유백색의 액상 또는 분무건조한 황갈색의 분말상 제품입니다.
- ◉ **사골국물** : 육 엑스가 분류되는 제1603.00-1000호에 분류
- ‘멸치액젓’은 멸치에 소금을 가하여 숙성·발효시킨 후 여과한 물품입니다.
- ◉ **멸치액젓** : 멸치를 압착하여 얻은 즙이므로 제1603.00-4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 (a)에 “육·어류 등의 엑스를 함유하는 수프·브로드 및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으로서 추가로 지방·젤라틴 및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식염과 같은 타물질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면 제21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사골곰탕(육함량 50% 미만)** :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

는 육 수프는 제2104.10-1000호에 분류





31 어묵(Fish cake) 및 어란(캐비아 대용물 등)의 품목분류

질문

-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또는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는?

답변

-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후 유탕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의 용어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묵 : 기타 생선푚이 분류되는 제1604.20-4090호에 분류

- 캐비아는 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4.3호 소호의 용어에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이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6) 캐비아대용물 :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 연어·잉어·열기·다랑어·숭어·대구 또는 물미거지)의 알로 조제된 것으로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척한 것, 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 착색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캐비아 : 제1604.31-0000호

◉ 캐비아대용물 : 제1604.32-0000호

※ 참고사항

단, 식용에 적합하거나 자궁막에 싸여 있는 어란으로서 단지 제03류(신선, 냉장, 냉동, 절단, 분쇄 등)에 규정된 가공법에 의해 처리된 것은 제03류의 각 가공방법에 따라 분류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

은 어란은 제0511호에 분류(예:수정란, 부화용의 알 등)됩니다.



32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질문

-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 멸치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 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16류 주2항과 제20류 주1항 제외규정에 따라 멸치 함유량에 의해 제1604호와 제2008호로 분류됩니다.
- ◉ 멸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초과할 경우 제1604.16-1000호에 분류
- ◉ 견과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일 경우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제2008.19-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16류 및 20류 주 내용 〉

* 관세율표 제16류 주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 육 · 설육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2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나. 소시지 · 육 · 설육 · 피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33 설탕(Sugar)의 품목분류

질문

- 설탕(Sugar)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1701.12호, 제1702.13호 및 제1702.14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비원심분리법**으로 제조되는 사탕수수당의 소호 신설(제 1701.13호)
- (신설)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2에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 제1701.13-0000호
-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1000호
-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2000호
-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 제1701.99-0000호

비원심분리법에 의한 조당



사탕수수 조당



백설탕(정제당)





34 맥주원액의 품목분류

질문

-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맥주원액에 대한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맥주원액이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원액으로 분쇄한 맥아를 물에 담가 당화시킨 후 홉을 첨가하여 끓이고 냉각시킨 상태로 발효처리를 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 따라서, 맥아추출물에 홉을 첨가한 알코올이 없는 식품이므로 맥주로 볼 수 없고 바로 음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2류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추출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맥아엑스는 맥아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 이들은 블록상 또는 분말상 또는 다소 점착성 액체이든지간에 이 호에 분류된다. 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엑스는 이 호에 분류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맥주원액 : 맥아추출물이 특게되어 있는 제1901.90-1000호에 분류

35 당면과 만두 등 파스타의 품목분류

질문

- 전분으로 만든 당면과 냉동 만두의 품목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1902호에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 ◉ 당면 : 기타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19-2000호에 분류
- ◉ 만두 : 속을 채운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20-0000호에 분류



━ < 파스타(Pasta)[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 > ━

- 소맥 · 옥수수 · 쌀 · 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 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채소, 계란, 밀크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예 :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압축하거나 모울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로 만들어서 보통 건조된다.
-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 속을 채운 파스타는(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내부의 육함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제1902호에 분류된다.

36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빵 및 쿠키의 품목분류

질문

- 스위트 비스킷이나 빵, 쿠키 등의 품목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A)-(8)-(b)에 “스위트 비스킷은 분, 설탕과 지방을 기제로 적어도 50% 이상 구성하고 있고 완제품의 수분함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35%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스위트 비스킷 : 제1905.31-0000호
- ◉ 와플 : 제1905.32-0000호
- ◉ 빵 : 제1905.90-1010호
- ◉ 쿠키 : 제1905.90-1040호에 분류

< 비스킷, 쿠키, 과자, 빵의 사전적 정의 >

- **비스킷(biscuit)** : 밀가루와 물 또는 우유로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구워낸 것
- **와플(waffle)** : 달걀, 설탕, 우유 등을 잘 섞어, 여기에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를 가한 것을 와플틀에서 굽고, 둘로 접어서 속에 잼이나 크림을 넣어서 만든 것
- **빵(bread)** : 곡식 가루에 소금 · 설탕 · 기름 · 베이킹파우더나 이스트를 넣어 반죽하여 부풀려 굽거나 찐 음식
- **쿠키(cookie)** : 비스킷의 한 종류. 일반적으로 비스킷보다 지방분을 많이 배합하여 사박사박한 느낌이 나도록 만든 것

37 볶은 땅콩의 2012년 이후 관세율 변동 여부

질문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볶은 땅콩(제2008호 분류 기준 부합)에 대한 2012년 이후 관세율 변동이 있는지와 볶은 땅콩의 기준세율인 63.9% 와 한-미 FTA 협정관세인 57.5%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볶은 땅콩이 분류되는 제2008.11-9000호는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므로 2012년 이후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관세 >

년도	세율	년도	세율
2012년	57.5%	2017년	25.5%
2013년	51.1%	2018년	19.1%
2014년	44.7%	2019년	12.7%
2015년	38.3%	2020년	6.3%
2016년	31.9%	2021년 이후	0%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양허표상 제2008.11-9000호의 양허유형이 G로 표기되어 있으며, 기준세율 63.9%는 관세철폐를 위한 기준으로 발효 즉시 10단계 중 1단계에 해당되는 6.4%를 감한 57.5%가 2012.12.31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관세철폐 >

-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G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관세철폐

38 삼투탈수 후 건조한 열대과실의 품목분류

질문

- 열대과일인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등을 설탕시럽에 담가 삼투탈수한 것을 건조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건조한 열대과실(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등)은 원 과실의 관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수입되는데, 과육을 삼투탈수 후 건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0)에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열대과실들을 장시간 설탕시럽에 담가 삼투탈수시킨 후 건조한 물품들은 제2008호의 각 해당 호에 분류합니다.
- ◉ 삼투탈수한 파인애플 : 제2008.20-0000호
- ◉ 삼투탈수한 파파야 : 제2008.99-9000호
- ◉ 삼투탈수한 망고 : 제2008.99-9000호



< 삼투탈수(Osmotic dehydration) 정의 >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흡겨가는 현상인 삼투압을 이용한 탈수방법으로 채소나 과일 등의 탈수에 이용된다.

39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낫또의 품목분류

질문

- 간장, 된장 등 장류 및 낫또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에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장류는 바로 식용에 공하는 형태가 아닌,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103호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 간장 : 제2103.10-0000호; 된장 : 제2103.90-1010호; 고추장 : 제2103.90-1030호
 - 하지만 낫또는 바실러스균으로 발효시킨 식품으로서 대두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제2008.19-9000호에 분류됩니다.



< 낫또의 제조방법 >

삶은 콩(大豆)을 벗짚으로 싸서 40도 정도의 보온상태로 약 하루 정도 보관하면 된다. 벗짚에 붙어 있던 낫또균이 콩으로 이동하여 증식함으로써 발효가 일어나고 낫또가 완성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량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혹은 전통적인 제조법으로는 질 좋은 벗짚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순수 배양한 낫또균을 이용하는 제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삶은 콩을 발포 스티롤 용기나 종이팩에 넣고 여기에 순수 배양한 낫또균의 분산액을 뿌린다. 이것을 적당한 온도로 보관하면 낫또균이 증식하여 발효된다.

40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질문

-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물품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펠렛(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됩니다.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1)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 쌀, 감자 등)는 펠리트 또는 분상, 케이크상으로 제시되며,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
 - 2) 비트펄프 : 사탕무의 근에서 설탕을 추출한 후에 남은 잔재물
 - 3) 버개스 :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잔재물
 - 4)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 Corn gluten feed : 옥수수전분을 얻고 남은 전분박이므로 제2303.10-0000호에 분류
- ◉ 비트펄프(Beetpulp) 및 버개스(Bagasse) : 제2303.20-0000호
- ◉ 사료용 주정박 : 증류시 생기는 박(dregs)이므로 제2303.30-1000호에 분류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41 담배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질문

-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와 워터파이프 담배의 품목분류는?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24류에 워터파이프 담배 소호주 및 소호 신설(제2403.11호)

< 관세율표 제24류 소호주 제1호 >

소호 제2403.11호에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 워터파이프(water pipe)로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담배(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를 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추출물(extract)과 당밀(糖蜜)이나 당(糖)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

◉ 워터파이프 담배 : 제2403.11-0000호

- WCO에서 전자담배를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호에 분류함에 따라 전자담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리지도 니코틴 함유여부 관계없이 담배대용물이 아닌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함 (HSK 신설)
- ◉ Nicotine, propylene glycol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액상의 전자담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리지 : 제3824.90-9061호(니코틴 함유) 또는 제3824.90-9069호(기타)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 ⦿ 니코틴 용액 포함한 전자담배 : 제8543.70-4010호
- ⦿ 니코틴 용액 포함하지 아니한 전자담배 : 제8543.70-409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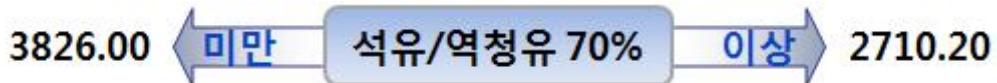
42 바이오디젤 관련 제품 품목분류

질문

- 바이오디젤의 함량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27류에 바이오디젤 소호주와 소호신설(제2710.20호) 및 제3826호에 '바이오디젤 및 그 혼합물'(석유 및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미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27류 소호주 5항 내용에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라 함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부터 얻어진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디젤을 함유한 제품은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량 7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43 니코틴 함유한 금연보조제의 품목분류

질문

- 니코틴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인 추잉검이나 패치의 품목분류는?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30류 주에 금연보조제(정제, 추잉검, 패치 등)에 대한 제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30류 주에 WCO 결정사례 삽입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 정제, 추잉검, 패치 (피부투여방식)](제2106호 또는 제3824호)

- ◉ 니코틴 함유 추잉검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니코틴함유 추잉검



- ◉ 니코틴 함유 패치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으로 보아 제3824.90-9090호에 분류

니코틴함유 패치



< WCO 결정 사례 >

- 물품명 : 니코틴 추잉껌(Nicotine chewing gum)
- HS 코드 : 제2106.90호
- 물품설명 : 이온교환수지와 결합한 니코틴 2mg 또는 4mg, 글리세롤, 합성폴리머,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담배향 등을 함유한 타브렛(정제)상이며,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



44 애견용 샴푸, 의류 및 사료의 품목분류

질문

- 애견용 샴푸와 의류, 그리고 사료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 (6) 동물 화장용제품(예 : 견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애견 샴푸 : 동물 화장용제품이 분류되는 제3307.90-9000호에 분류

애견 샴푸



- 관세율표 제4201호에 “동물용의 마구(개용 코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견용 코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애견 의류 : 견용 코트가 분류되는 제4201.00-9090호에 분류

애견 의류



※ **애견 사료** : 소매용 개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
되는 제2309.10-1000호에 분류

애견 사료





45 수정테이프의 품목분류

질문

- 수정테이프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38류 주에 수정테이프 내용 신설
 - 제38류 주에 WCO 결정사례 삽입
 - 3. 제3824호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기타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22)항 내용에 “소매용으로 포장한 수정용 테이프 :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디스펜서에 담겨져 제공되는 수정용 리본 두루마리로서 타이프문서, 필서, 사진복사, 오프셋인쇄마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있는 글씨 또는 타이프 인쇄 오류 또는 불필요한 기호를 감추는 데 사용된다. ~(중략)~ 수정 리본은 리본의 표면에 도포된 불투명한 안료 코팅으로 형성되어 있다. 코팅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 위에 전사 헤드를 압착함으로써 도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수정테이프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으로 보아 제3824호에 분류
- ※ 수정액 : 제3824.90-5300호

< WCO 결정 사례 >

- 물품명 : 수정 테이프 (Correction tape)
- HS 코드 : 제3824.90호
- 물품설명 : 필기 또는 타이핑한 것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공급릴에 감겨있는 룰상의 수정리본과 사용된 리본을 감아 들이는 테이크업 릴을 포함하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펜서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 리본은 리본의 표면에 바르도록 되어 있는 백색 안료 코팅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팅필름은 디스펜서에서 튀어나온 이동 헤드를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뒤덮여질 때까지 미끄러지듯이 이동한 다음 이동 헤드를 수직으로 들어올림으로써 발라진다.

46 가죽(Leather)의 범위 정의

질문

- 품목분류상 가죽의 정의와 가죽의 품목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서 제42류 '가죽(Leather)'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제42류 주1항에 '이 류에서 "가죽"은 샐미(콤비네이션 샐미를 포함한다) 가죽, 페이턴트 레더,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죽 : 샐미가죽, 페이턴트 레더,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메탈라이즈드 레더
 - * 제4202.21호의 용어 개정
외부표면이 가죽·콤퍼지션 레더 또는 페이턴트 레더제인 것
⇒ 외부표면이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제인 것
- ◉ 샐미가죽(Chamois leather) : 제4114.10-0000호
-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제4114.20-1000호
- ◉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aminated leather) : 제4114.20-2000호
- ◉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 제4114.20-3000호
- ◉ 외부표면이 뱀가죽제 핸드백 : 제4202.21-1010호

47 아이튠즈(i-Tunes) 카드의 품목분류

질문

- 음악, 영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인 아이튠즈 카드의 품목번호는?

답변

- 아이튠즈(iTunes) 카드란 애플이 아이튠즈를 통해 서비스하는 온라인 미디어인 음악과 오디오북, 뮤직 비디오, 영화, TV 프로그램, 아이팟용 게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카드 뒷면에 스크래치 부분을 동전으로 긁어 확인한 개별코드(16자리)를 사용 가능한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에 충전한 후 유료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선불카드를 말한다.
-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을 보면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타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911호에는 기타 인쇄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복권, 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등을 예시하고 있음.

- iTunes card : 플라스틱 카드에 사용가능 금액, 인식코드, 사용설명 등이 인쇄되어 있고 유료 콘텐츠 등을 구매하기 위한 선불카드인 기타 인쇄물로 보아 제4911.99-0000호에 분류



48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질문

-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 ◉ 인조섬유 : 합성섬유와 재생 및 반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
 - 1) 합성섬유 :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또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 2) 합성필라멘트섬유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는 제5402.33-9000호에 분류
- 2)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 : 구리암모늄 레이온(큐프라), 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 중합체(예 : 셀룰로오스)를 용해 또는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또는 초산셀룰로오스, 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유기중합체 (셀룰로오스, 카세인 및 기타 단백질 또는 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 재생필라멘트섬유 :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꼬임이 없는 비스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코스레이온 비텍스처드사는 제5403.31-9000호에 분류

49 남자, 여자 및 유아용 의류의 품목분류

질문

- 남자 및 여자 의류와 유아용 의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잡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잡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남자(소년)용 의류 :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잡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한다.
- ◉ 여자(소녀)용 의류 :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잡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 ◉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 유아용 의류 :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및 주 제9호 규정

50 편물제 보정 속옷(거들 등)의 품목분류

질문

- 여자용 보정 속옷인 거들이나 코르셋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6212호에 “브래지어, 거들, 코르셋, 브레이스, 서스펜더, 가터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신체지지 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거들 및 팬티거들(면제) : 제6212.20-1000호
- ◉ 코르슬렛(Corselettes) : 제6212.30-0000호
- ◉ 코르셋(Corsets) : 기타가 분류되는 제6212.90-0000호에 분류



< 보정 속옷 종류 >

파운데이션 : 체형의 결점을 보정하는 속옷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브래지어
- 거들 : 허리 부분의 체형을 조절하기 위한 여성용 속옷
- 코르슬렛 : 거들 또는 팬티거들과 브래지어의 결합물품
- 코르셋 : 배와 허리 둘레를 졸라매어 체형을 보정하거나 교정하기 위해 착용하는 여성용 속옷
- 올인원(all in one) : 브래지어에 코르셋이 연결되어 있는 것
- 웨이스트 니퍼 : 허리를 가늘게 죄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 파니에 : 스커트의 도련선을 넓게 퍼지도록 허리부분에서 받쳐주는 것

51 자기와 기타 도자기(도기, 석기)의 구분

질문

- 자기와 도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며, 도자제의 컵의 품목분류는?

답변

- 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경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 또는 인공착색되었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공명성이 있습니다.
- ◉ 자기제 컵 : 자기제의 기타 식탁용품이므로 제6911.10-9000호에 분류
- 기타 도자제품은
 - 1) 다공질의 소지로 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설(舌)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석기(stoneware) : 이 물품은 조직이 치밀하고 철침에 의하여도 흠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경고하지만 불투명하고 보통은 일부만이 유리화되었으므로 자기와는 다릅니다.
 - 3) 반자기 또는 모조자기 : 외관이 상업적 자기가 되도록 조제, 장식 및 유약으로 시공된 것이다. 토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사실상 반투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 ◉ 도기제 및 석기제 컵 : 도자제의 기타 식탁용품이므로 제6912.00-1090호에 분류



52 캠핑용 스토브 등의 품목분류

질문

-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스토브, 바비큐 그릴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7321호에 “철강제의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를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일정구역의 가열, 취사 또는 자비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되고, 고체, 액체 또는 기체연료,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보통 가정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의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스토브 : 가스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1-0000호, 액체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2-0000호에 분류
- 바비큐 그릴 : 숯을 사용하는 조리용 가열판이므로 제7321.19-0000호에 분류
- 난방용 스토브 : 액체연료용의 가열용 스토브이므로 제7321.82-0000호에 분류

가스 및 액체용 스토브



철강제 바비큐 그릴



실내 난방용 스토브



53 플렉시블(Flexible) 호스의 품목분류

질문

- 플라스틱제나 비금속으로 된 플렉시블 호스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8307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 (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에는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시킨 스크립으로 구성되는 플렉시블 튜빙과 표면이 매끄러운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의 플렉시블 튜빙형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플렉시블 호스는 재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철강제의 것 : 소호 제8307.10호에 분류
 - ⌚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 소호 제8307.90호에 분류
 - ⌚ 플라스틱 재질의 것 : 소호 제3917.31호에 분류

철강제 플렉시블 호스



비금속제 플렉시블 호스



플라스틱제 flexible 호스





54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

질문

-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 컴퓨터 :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제8471호에 분류(제시형태에 따라 분류)
- 관세율표 제8471.30-000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소호해설] >

소호 제8471.30호

이 소호에는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 이의 케이스에는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고 중량은 10 kg 이하이다. 평면화면을 갖춘 이 기계는 외부의 전원 연결 없이 작동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한 음성용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 ◉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제8471.30-0000호에 분류

55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질문

- 갤럭시 기어 같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요기능 : 시계 기능 이외에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한 전화 발신, 수신 전화의 수신 및 무음 처리, 문자 메시지 수신, 페이스북 · 트위터 등 SNS 기능, 음악 재생 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답변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 제8528호의 송신용 ·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기타 음성 ·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원격신호의 송신기 · 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6) 보통 전지식으로 작동되는 휴대용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 스마트워치 :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보아 제8517.62-6090호에 분류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56 소프트웨어(software) CD의 품목분류

질문

- 소프트웨어 CD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8523.4호에 “광학식 매체”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트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hardware)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느 문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로서 운영체제(UNIX, DOS), 컴파일러(C, Fortran), 입출력제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하며, 통상 컴퓨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만들어 공급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유형의 물품상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의 분류되는 호는 없으며, 저장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현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CD에 저장되는 형태이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CD :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가 분류되는 제8523.49-1011호에 분류

57 CD(음악, 영화, 게임 등)의 품목분류

질문

- 음악 CD, 게임 CD 및 영화 DVD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8523.4호에는 “광학식 매체”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B)광학식 매체에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 또는 기타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기록된 디스크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예: CDs · V-CDs · CD-ROMs · CD-RAMs), DVD가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자기-광학 매체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CD 및 DVD는 레이저판독장치용 디스크가 해당하는 제8523.4호로 분류되며, 기록여부 및 기록된 내용에 따라 소호가 달라집니다.
- ◉ 공 CD : 기록이 안 된 광학식 매체가 분류되는 제8523.41-0000호에 분류
- ◉ 음악 CD : 음악만을 재생하는 광학식 디스크가 분류되는 제8523.49-1020호에 분류
- ◉ 게임 CD : 컴퓨터가 아닌 닌텐도 Wii 전용게임이므로 제8523.49-1039호에 분류
- ◉ 영화 DVD : 음성 및 영상이 저장된 영화 DVD이므로 제8523.49-1039호에 분류

류

공 CD



음악 CD



게임 CD



영화 DVD





58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질문

-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카메라는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물품입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및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웹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 CCTV 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는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것을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CCTV라고 부른다. 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 ※ 웹캠(Webcam)은 웹(web)과 카메라(camera)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거나 서비스되는 인터넷 캠코더를 말한다.

- ◆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웹캠(Webcam) : 텔레비전 카메라이므로 제8525.80-10**호에 분류



59 Y형 Strainer의 품목분류

질문

- 플랜지형 Y형 스트레이너(Strainer)(유체 : 경유)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Strainer에 대한 용어사전에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공학용어사전 : 원통 위가 금속망으로 되어 있는 여과기를 말한다. 배관 속을 설치하고 모래, 농, 금속 쓰레기 등이 각 기구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 기계공학용어사전 : 먼지나 기타 불순물 등을 여과하는 기기 또는 여과망을 말한다.
- Strainer의 주기능은 액체나 기체의 불순물이나 이물질 등을 필터시켜주는 여과기에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21.23호 소호의 용어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가 특게되어 있습니다.

Y형 Strainer



- ◑ Y형 Strainer : 제8421.23-1000호에 분류

60 수륙 양용 버스의 품목분류

질문

-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50인승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은?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87류 총설내용에 '수륙양용 자동차는 이 류의 자동차로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702호에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 수송용의 자동차'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내연기관의 종류와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여부에 따라 제8702호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 또는 세미디젤)의 것
 - ⇒ 신차 : 제8702.10-3010호 (기본 10%, 한-EU FTA 협정관세 0%)
 - ⇒ 중고차 : 제8702.10-3020호 (기본 10%, 한-EU FTA 협정관세 0%)
 - 기타 내연기관의 것
 - ⇒ 신차 : 제8702.90-3010호 (기본 10%, 한-EU FTA 협정관세 0%)
 - ⇒ 중고차 : 제8702.90-3020호 (기본 10%, 한-EU FTA 협정관세 0%)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목록

61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품목분류

질문

-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3호에 '모터홈(캠퍼 등) :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 캠핑카는 불꽃점화식인지 압축점화식인지 여부, 실린더 용량,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여부 등에 따라 HS 4단위 이후가 달라집니다.

◉ 캠핑카 : 제8703.33-7000호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며,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경우

캠핑카



- 관세율표 제8716.10-0000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1)에 '주거 또는 캠핑용의 이동주택형 트레일러(여행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캠핑용 트레일러 : 제8716.10-0000호

캠핑용 트레일러



62 캠퍼(Camper)의 품목분류

질문

- 꾹업트럭 위에 적재할 수 있는 캠퍼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캠퍼는 탁자·간이침대 등 편의시설이 있어 휴식, 수면이 가능하며, 싱크대가 있어 별도의 장치(예: 가스레인지, 물탱크 등) 설치 시 취사 가능

답변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캠퍼는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캠핑 또는 차량으로 장거리 여행시 휴식 등의 목적을 위해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차량의 부속품’으로 보아 제8708.99-9000호에 분류
- ※ 참고로 캠퍼는 차륜이 없으며, 밀거나 끌거나 혹은 견인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제8716호에 분류할 수 없음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캠퍼(질의물품)



픽업트럭



결합상태

부

록



관세상담 관련 연락처

□ 관세청 연락처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http://call.customs.go.kr	관세행정 상담전반
관세청 밀수, 관세탈루 신고	국번없이 125	http://www.customs.go.kr	밀수/관세포탈, 마약, 불법외환신고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HELP-DESK)	1544-1285	http://portal.customs.go.kr	UNI-PASS,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관세청 세관신문고	080-512-2339	http://www.customs.go.kr	관세행정불만, 개선건의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05	http://cvnci.customs.go.kr/	과세환율, 평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1과	042-714-7535	http://cvnci.customs.go.kr/	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 안내
관세평가분류원 분류2과	042-714-7583	http://cvnci.customs.go.kr/	품목분류(01~81, 84류)
관세평가분류원 분류3과	042-714-7556	http://cvnci.customs.go.kr/	품목분류(82~83, 85~97류)
중앙관세분석소	055-792-7312~5	http://ccls.customs.go.kr	분석, 과학기술지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00~6	http://post.customs.go.kr	국제우편물통관
부산국제우편세관	055-783-7412	http://www.customs.go.kr/busanpostal	국제우편물통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1~9	http://customs.go.kr/seoul	이사물품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4	http://customs.go.kr/incheon	이사물품

□ 수출입관련 문의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2-3416-5000	http://www.kctdi.or.kr	수출입설적, 무역통계표 교부
한국관세물류협회	02-701-1455~8	http://www.kcla.kr	보세사시협, 보세운송업자 차량 등록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	http://www.kcba.or.kr	관세사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http://www.kotra.or.kr	외국의 관세율, 외국통관제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02-759-5779, 5793	http://www.bok.or.kr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상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http://www.nts.go.kr	내국세 문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http://www.kita.net	무역업체조회, 무역상담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http://www.patent.go.kr:7078	위조상품신고센터
특허청 고객센터	1544-8080	http://www.kipo.go.kr	상표등록확인, 지식재산권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33	http://koreapost.go.kr/se/ipo	우편물도착확인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http://www.kosti.or.kr/	전략물자 판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00	http://www.sw.or.kr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 처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02-782-2263	http://www.kdvo.or.kr	세관물품위탁판매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1577-8863	http://www.komdi.or.kr	위험물 분류, 선적허가 등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1566-2119	http://www.ktnet.co.kr	전자통관서비스, 무역서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	02-6050-3303	http://cert.korcharm.net	원산지증명서, 까르네 발급
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http://www.naqs.go.kr	농산물원산지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9	http://www.motie.go.kr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5	http://www.motie.go.kr	원산지제도문의

□ 수출입요건확인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14	http://www.nier.go.kr	소음 인증(소음 진동 규제법), 배출가스인증(대기환경보전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1577-0990	http://www.ts2020.kr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0	http://www.molit.go.kr	형식승인, 형식신고 (건설기계관리법)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http://www.qia.go.kr	농수축산식품검역검사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114	http://www.nfrdi.re.kr	이식승인(수산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	1577-1255	http://www.mfds.go.kr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 마약류관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http://www.kpt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화장품법)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http://www.kahp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	http://www.kmdi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02-754-5921	http://www.kodda.co.kr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02-467-0350	http://www.medinet.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조사홍보팀)	02-761-1101, 1104	http://www.aerospace.or.kr	수출입공고(항공기 등), 관세감면
한국석유공사	052-216-2114	http://www.knoc.co.kr	석유수입부과금(석유사업법)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4177	http://www.keco.or.kr	폐기물부담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통일부 남북경협과	1577-1365 02-2100-5795	http://www.unikorea.go.kr	반출입승인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647	http://www.police.go.kr	총포, 도검, 화약류수입허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00	http://www.kdia.or.kr	방위사업법 (일반방산물자수출허가)
방위사업청	1577-1118 02-2079-6449, 6455 (수출진흥과)	http://www.dapa.go.kr/	방위사업법 (주요방산물자수출입허가)
문화재청 공항감정관실	032-740-2921~2	http://www.cha.go.kr	문화재보호법(비문화재확인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136	http://www.cha.go.kr	문화재보호법(반출허가)
국립농업과학원	063-238-2000	http://www.naas.go.kr	중금속검사합격(비료관리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http://www.kfeedia.org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www.nonghyup.com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쌀보리수출추천(양곡관리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http://www.kofeed.org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한국종자협회	031-760-1620~1	http://www.kosaseed.or.kr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국번없이 110 044-201-1822	http://www.mifaff.go.kr	수입허가(양곡관리법), 양허관세추천(보리, 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2088-7245	http://www.kscia.or.kr	수입금납부, 수입확인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공단	052-703-0500 1644-4544	http://www.kosha.or.kr	위험기계, 보호구검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방사선진흥협회	02-3490-7114	http://www.ri.or.kr	원자력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25, 6755	http://www.kcma.or.kr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1577-8866 044-201-7184	http://www.me.go.kr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5	http://www.me.go.kr	야생동식물보호법, CITES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http://www.me.go.kr	수출입허가(폐기물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바젤협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http://www.ktc.re.kr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http://www.rra.go.kr	정보통신기기형식인증, 무선 기기형식검정등록, 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정보통신기본법, 전파법)
국가기술표준원	1381 043-870-5600	http://www.kats.go.kr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품질 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2669-0791~5	http://www.kpec.or.kr	추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영상물등급위원회	051-990-7200	http://www.kmrb.or.kr	등급분류(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물관리위원회	051-720-6800	http://www.grb.or.kr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관세감면추천 확인 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http://www.kocema.org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02-565-2721~5	http://www.komma.org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8600	http://www.koami.or.kr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6-3472~4	http://www.ksia.or.kr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22	http://mosf.go.kr	감면, 반덤핑(44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14	http://www.koita.or.kr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관세감면)
외교부	02-2100-2114	http://www.mofat.go.kr	외교관용품 확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4	http://mosf.go.kr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인베스트 코리아)	1600-7119	http://www.investkorea.org	외국인투자촉진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6	http://www.mw.go.kr	장애인용품(관세감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8	http://www.mke.go.kr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7	http://www.mke.go.kr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 양허관세추천 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http://www.aiak.or.kr	종우, 종돈
대한양계협회	02-588-7651~4	http://www.poultry.or.kr	종계, 조란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http://www.koreadia.or.kr	분유, 연유, 유장, 버터, 유당
국립종자원	054-912-0119	http://www.seed.go.kr	종자용감자,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조, 대두, 사료용근채류
한국과수종묘협회	041-575-5337	http://www.kkja.org	종묘
산림조합중앙회	02-3434-7114	http://www.nfcf.or.kr	대추, 밤, 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064-739-5401	http://www.citrus-cheju.com	오렌지, 감귤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대두가공협회	02-712-9431		대두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http://www.milkreplacer.or.kr	기타 배합사료, 보조사료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http://www.kofeed.org	매니옥펠리트, 보리, 옥수수, 대두, 사료용근채류, 참깨유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http://www.kfeedia.org	골분, 사료용근채류, 육분, 보조사료
대한잠사회	02-783-6071~5	http://ksa.silktopia.or.kr	잠종, 뽕나무
한국생사수출입조합	02-785-5915		누에고치, 생사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752-8097	http://www.weaving.or.kr	생사
한국섬유수출입조합	02-528-5151~8	http://www.textra.or.kr	생사
한국전분·당협회	031-440-9941		옥수수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www.nonghyup.com	천연꿀, 고구마, 매니옥펠리트, 종자용호밀, 종자용귀리, 맥주맥,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수수, 맥아, 전분, 이눌린, 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인조꿀, 참깨유박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14	http://www.at.or.kr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팔, 기타서류, 오렌지, 감귤, 목차, 생강, 옥수수, 메밀,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대두,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http://www.kpta.or.kr	옥수수, 매니옥전분, 밀전분, 변성전분등
한국글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02-3474-7124	http://www.kcca.or.kr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http://www.paper.or.kr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 할당관세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대한석유협회	02-3775-0520~5	http://www.petroleum.or.kr	석유, 역청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00	http://www.kfpic.or.kr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02-782-7880		폴리(락트산)
한국생사수출입조합	02-785-5915		생사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752-8097	http://www.weaving.or.kr	생사
한국섬유수출입조합	02-528-5151~8	http://www.textra.or.kr	생사
한국철강협회	02-559-3500	http://www.kosa.or.kr	페로실리코망간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6-3472	http://www.ksia.or.kr	동의박
한국비철금속협회	02-567-2313~4	http://www.nonferrous.or.kr	니켈분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http://www.milkreplacer.or.kr	유장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http://www.kfeedia.org	유장, 귀리(사료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한국주류산업협회	02-780-6412, 6414	http://www.kalia.or.kr	매니옥쵸(주정용), 조주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http://www.kofeed.org	매니옥 쵸과 펠리트(사료용), 겉보리(사료용), 귀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사료용),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www.nonghyup.com	매니옥 쵸과 펠리트(사료용), 호밀(녹비용), 맥주맥, 겉보리(사료용), 귀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밀전분, 맥아(맥주제조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사료용),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한국콘협회	02-571-6082~3	http://www.kocac.org	팝콘용 가공용 옥수수
한국곡물차재가공협동조합	02-2652-5166		가공용 옥수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http://www.kpta.or.kr	옥수수전분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http://www.paper.or.kr	옥수수전분, 매니옥전분
한국글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02-3474-7124	http://www.kcca.or.kr	옥수수전분
한국제분협회	02-777-9451	www.kofmia.org	밀(제분용)
한국전분·당협회	02-521-7741		가공용 옥수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114	http://www.at.or.kr	가공옥수수(콘그리츠제조용)
한국대두가공협회	02-715-1618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http://www.koreadia.or.kr	유당
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http://www.kfia.or.kr	카세인 및 카세인유도체(커피크리머제조용)
한국비료공업협회	02-552-2811~2	http://www.fert-kfia.or.kr	요소(비료 및 비료제조용)
한국작물보호협회	02-3474-1590~4	http://www.koreacpa.org	농약원제

□ 한·아세안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http://www.at.or.kr	강낭콩(기타용)
국립종자원	054-912-0114	http://www.seed.go.kr	강낭콩(종자용)
한국주류산업협회	02-780-6404	http://www.kalia.or.kr	매니옥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http://wwwpaper.or.kr	매니옥 전분
한국수산무역협회	02-6300-8901	http://www.kfta.net	새우, 새우살, 냉동갑오징어, 새우가공식품

□ 한·EFTA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051-254-9011~5	http://www.sunmang-suhyup.co.kr	냉동고등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http://www.at.or.kr	스위스치즈

□ 한·칠레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http://www.at.or.kr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유장, 기타채소, 맥더린, 자두

□ 한·EU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http://www.at.or.kr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오렌지, 맥주맥, 맥아, 텍스트린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http://www.koreadia.or.kr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http://www.kfeedia.org	보조사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http://milkreplacer.or.kr/	

□ 한·미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http://www.at.or.kr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감자(칩용 및 종자용 제외), 오렌지, 보리, 맥주맥, 맥아, 옥수수전분, 수삼, 백삼, 텍스트린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http://www.koreadia.or.kr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http://www.kfeedia.org	사료용 식물, 보조사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http://milkreplacer.or.kr/	

2015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I)

인 쇄 : 2015년 12월

발행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http://call.customs.go.kr>)

발행인 : 이찬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기획 · 편집 : 이진희(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안준(관세청 고객지원센터장)

상담팀(강성희, 이재원, 서현애, 김인호,

강정명, 김문현, 안진혁)

연락처 : (02) 3438-5113

인쇄처 : (주) 협동문고 (02-545-6188)

※ 본 책자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